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상 농산자조금 제도의 별도 법률 제정〉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71호)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14호)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02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12
1.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 내용	12
가. 제정안의 구성체계	12
나. 제정안의 주요 내용	20
다. 관계기관 의견	22
2. 법 제정 필요성	23
가. 농산자조금의 운영 현황	23
나. 법 제정 필요성	33
3. 조문별 검토	35
가. 총칙 규정	35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37
2) 검토의견	38
(1) 제1조: 목적	38
(2) 제2조: 정의	41
(3) 제3조 신설: 다른 법률과의 관계	45
나.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 전환	46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49
2) 검토의견	50
(1) 제4조 신설: 법인격	50
(2) 제5조 신설: 사업	53
(3) 제6조 신설: 설립인가	55

(4) 제7조 신설: 설립등기	59
(5) 제8조 신설: 정관 기재사항	61
다. 자조금단체의 회원 범위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63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63
2) 검토의견	64
(1) 제9조 신설: 회원	64
(2)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68
라. 자조금단체의 지배구조	70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78
2) 검토의견	79
(1) 제11조: 총회	79
(2) 제12조: 대의원회	86
(3) 제13조 신설: 임원	89
(4) 제14조: 이사회	91
(5) 제15조: 자조금 운용과 관리	97
(6) 제16조: 생산·유통 자율조절	103
(7) 제17조 신설: 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108
(8) 제18조: 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110
(9) 제19조 신설: 청산 등	117
(10) 제20조 신설: 준용규정	120
(11) 제21조: 개선 등 조치명령	125
(12) 제22조: 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따른 수납중지 등	129
(13) 제23조 신설: 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	133
마.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	136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141
2) 검토의견	142
(1) 제24조: 자조금의 조성	142

(2) 제25조: 출연 또는 지원	147
(3) 제26조: 자조금의 재원	149
(4) 제27조: 자조금의 용도	153
(5) 제28조: 거출금의 산정기준	156
(6) 제29조: 거출금의 납부	158
(7) 제30조: 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163
(8) 제31조: 거출금의 수납위탁	165
(9) 제32조: 자조금 운용 평가	172
(10) 제33조: 과오납금의 환급	178
(11) 제34조: 자조금회계의 구분	180
(12) 제35조: 공시	182
바. 지역자조금 제도 도입 등 자조금 제도의 확장	185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191
2) 검토의견	192
(1) 제36조 신설: 지역자조금	192
(2) 제37조: 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196
(3) 제38조: 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200
(4) 제39조 신설: 전담기관의 지정 등	203
(5) 제40조 신설: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09
(6) 제41조: 지도·감독	212
(7) 제4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15
사. 벌칙	218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220
2) 검토의견	221
(1) 제43조: 벌칙	221
(2) 제44조: 양벌규정	224
(3) 제45조: 과태료	226

아. 부칙	232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234
2) 검토의견	235
(1) 부칙 제1조: 시행일	235
(2) 부칙 제2조: 거출금의 납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236
(3) 부칙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238
(4) 부칙 제4조: 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239
(5) 부칙 제5조: 자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242
(6) 부칙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44
(7) 부칙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245
(8) 부칙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48

※ 참고자료

[참고] 품목별 농산자조금단체 현황(2024년 기준)	250
-------------------------------------	-----

I. 제안경위

1. 김선교의원안(2205471)

가.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제안일 : 2024. 11. 12.

다. 회부일 : 2024. 11. 13.

2. 이만희의원안(2205614)

가.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제안일 : 2024. 11. 15.

다. 회부일 : 2024. 11. 18.

3. 박덕흠의원안(2205702)

가.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나. 제안일 : 2024. 11. 19.

다. 회부일 : 2024. 1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선교의원안(2205471)

제안이유

농업 분야에서 FTA체제에 따른 시장 확대에 인하여 생산자 주도의 자율적 대응 기반으로서 품목별 자조금의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여전히 자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농업인 등의 적극적 참여가 미흡한 상황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품목 대표조직으로서의 자조금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과 회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체계화하여 농산물의 수급조절 주체로서 해당 품목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산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기금으로 함(안 제2조의1호).

나. 농산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다. 자조금단체(안 제4조부터 제21조까지)

1)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당연회원의 자격을 가진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과 자조금단체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2)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은 당연회원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자조금단체가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 거출금의 납부 및

생산·유통 자율조절의 결정 등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농업인 등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4) 자조금단체에 이사회를 두고 자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5)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수행하려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6) 자조금단체는 해산사유의 발생, 회원 10분의 1 이상의 해산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인가 취소에 의하여 해산됨.

라.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안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

1)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농산자조금만을 설치·운용·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자조금은 거출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등으로 구성하되,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및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

4) 자조금단체는 거출금의 금액을 회원별로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판매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

도록 함.

5)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 내에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 조절 등을 위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7) 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과 자조금의 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 중심의 농산물 수급 관리 및 품목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지역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거출을 위하여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2. 이만회의원안(2205614)

제안이유

FTA체제에 따른 시장 확대로 인하여 농업 분야에서 농업인 등의 자율적 대응 기반으로서 품목별 자조금의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농업인 등의 적극적 참여가 미흡한 상황임. 품목 대표조직으로서의 자조금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과 회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체계화하여 농산물의 수급조절 주체로서 해당 품목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산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기금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농산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다.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1)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농산자조금만을 설치·운용·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자조금은 거출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등으로 구성하되,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및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

4)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 내에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5)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 조절 등을 위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6) 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과 자조금의 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자조금단체(안 제16조부터 제34조까지)

1)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당연회원의 자격을 가진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과 자조금단체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2)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은 당연회원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자조금단체가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 거출금의 납부 및 생산·유통 자율조절의 결정 등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농업인 등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4) 자조금단체에 이사회를 두고 자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5)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수행하려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6) 자조금단체는 해산사유의 발생, 회원 10분의 1 이상의 해산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인가 취소에 의하여 해산됨.

7) 자조금단체 간 정보교류 등 자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 중심의 농산물 수급 관리 및 품목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지역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거출을 위하여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3. 박덕흠의원안(2205702)

제안이유

FTA 등 시장 개방과 고령화, 양극화 등 많은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의 기반 약화가 우려되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의 자율적 대응 기반으로 품목별 자조금의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조금 조성률이 낮고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확보도 미흡하여 자조금 도입의 취지나 역할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과 회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 조성·운용·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생산자인 농업인 스스로 품목별 생산조정, 수출확대 등 해당 농산물의 품목대표조직으로서의 자조금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조금의 발전은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해당 품목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견인하는 초석이 될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기금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농산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다. 자조금단체(안 제4조부터 제23조까지)

- 1)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당연회원의 자격을 가진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과 자조금단체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2)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은 당연회원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자조금단체가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3) 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 거출금의 납부 및 생산·유통자율조절의 결정 등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농업인 등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4) 자조금단체에 이사회를 두고 자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5)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생산·유통자율조절을 수행하려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6) 자조금단체는 해산사유의 발생, 회원 10분의 1 이상의 해산요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설립인가 취소에 의하여 해산됨.

7) 자조금단체 간 정보교류 등 자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라.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안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

1)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농산자조금만을 설치·운용·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자조금은 거출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등으로 구성하되,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및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

4)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 내에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5)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 조절 등을 위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6) 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중장

기 운영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과 자조금의 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함.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 중심의 농산물 수급 관리 및 품목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지역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거출을 위하여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 내용

가. 제정안의 구성체계

세 건의 제정안은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조금법」”이라 한다)에서 농산물조금을 분리하여 규정하면서, 농산물조금 제도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게 법률의 체계를 개선하고자 제안된 것임.¹⁾

이는 현재 「농수산물조금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농산물조금과 수산물조금 중 농산물조금에 대하여는 그 공적기능을 강화하고 법적 성격을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수산물조금에 대하여는 공적기능 수행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없어, 농산물조금과 수산물조금을 함께 규정하는 하나의 법률상에서 농산물조금에 대한 정책적 요구만을 구별하여 반영하는 것이 어렵게 됨에 따른 것임.

세 건의 제정안은 각 제정안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총 5개 장으로 구성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김선교의원안은 43개 조문과 부칙 8개 조문, 이만희의원안은 44개 조문과 부칙 8개 조문, 박덕흠의원안은 45개 조문과 부칙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1) 「농수산물조금법」과 제정안의 차이에 대하여는 참고자료1을 참조

< 세 건의 제정안 구성체계 비교 >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비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세건의 제정안 모두의 구성이 동일함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자조금단체 (이만희의원안의 경우 제3장)			
제4조(법인격)	제16조(법인격)	제4조(법인격)	- 세건의 제정안 모두의 구성은 대부분 동일하나, 일부 차이가 있음 - 차이점 ① : 박덕흠의원안의 경우, 다른 제정안에 없는 <u>준용규정</u> (해산 및 청산 관련)이 있음 - 차이점 ② : 김선교의원안의 경우, 다른 제정안에 있는 <u>자조금단체 연합회의</u> 의 설립 규정이 <u>부재함</u>
제5조(사업)	제17조(사업)	제5조(사업)	
제6조(설립인가)	제18조(설립인가)	제6조(설립인가)	
제7조(설립등기)	제19조(설립등기)	제7조(설립등기)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제20조(정관의 기재사항)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제9조(회원)	제21조(회원)	제9조(회원)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1조(총회)	제23조(총회)	제11조(총회)	
제12조(대의원회)	제24조(대의원회)	제12조(대의원회)	
제13조(임원)	제25조(임원)	제13조(임원)	
제14조(이사회)	제26조(이사회)	제14조(이사회)	
제15조(자조금 운용과 관리)	제27조(자조금 운용과 관리)	제15조(자조금 운용과 관리)	
제16조(생산·유통 자율조절)	제28조(생산·유통 자율조절)	제16조(생산·유통 자율조절)	
제17조(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제29조(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제17조(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제18조(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제30조(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제18조(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제19조(청산 등)	제31조(청산 등)	제19조(청산 등)	
		제20조(준용규정)	
제20조(개선 등 조치명령)	제32조(개선 등 조치명령)	제21조(개선 등 조치명령)	
제21조(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따른 수납중지 등)	제33조(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따른 수납중지 등)	제22조(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따른 수납중지 등)	
	제34조(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	제23조(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	
제3장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 (이만희의원안의 경우 제2장)			
제22조(자조금의 조성)	제4조(자조금의 조성)	제24조(자조금의 조성)	- 세건의 제정안 모두의 구성이 동일함
제23조(출연 또는 지원)	제5조(출연 또는 지원)	제25조(출연 또는 지원)	
제24조(자조금의 채원)	제6조(자조금의 채원)	제26조(자조금의 채원)	
제25조(자조금의 용도)	제7조(자조금의 용도)	제27조(자조금의 용도)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비고
제26조(거출금의 산정기준) 제27조(거출금의 납부) 제28조(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제29조(거출금의 수납위탁) 제30조(자조금 운용 평가) 제31조(과오납금의 환급) 제32조(자조금회계의 구분) 제33조(공시)	제8조(거출금의 산정기준) 제9조(거출금의 납부) 제10조(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제11조(거출금의 수납위탁) 제12조(자조금 운용 평가) 제13조(과오납금의 환급) 제14조(자조금회계의 구분) 제15조(공시)	제28조(거출금의 산정기준) 제29조(거출금의 납부) 제30조(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제31조(거출금의 수납위탁) 제32조(자조금 운용 평가) 제33조(과오납금의 환급) 제34조(자조금회계의 구분) 제35조(공시)	
제4장 보칙			
제34조(지역자조금) 제35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제36조(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제3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8조(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9조(지도·감독)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5조(지역자조금) 제36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제37조(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제38조(자조금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²⁾ 제39조(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0조(지도·감독)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6조(지역자조금) 제37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제38조(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40조(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1조(지도·감독)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세건의 제정안 모두의 구성이 동일함 - 다만, 이만희의원안은 전담기관을 ‘자조금통합지원센터’로 명명함
제5장 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양벌규정) 제43조(과태료)	제42조(벌칙) 제43조(양벌규정) 제44조(과태료)	제43조(벌칙) 제44조(양벌규정) 제45조(과태료)	- 세건의 제정안 모두의 구성이 동일함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거출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자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시행일) 제2조(거출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자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시행일) 제2조(거출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자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세건의 제정안 모두의 구성이 동일함

자료: 세 건의 제정안(2205741, 2205614, 2205702)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1. 8.

2) 조 제목에 오기가 있음(자조금통‘합’지원센터 →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세 건의 제정안은 이만회의원안이 다른 두 제정안과 비교하여 제2장과 제3장의 순서를 변경하는 사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구성체계에 있어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조 개수가 각각 43개조, 44개조 및 45개조로 차이가 있음. 이는 ① 박덕흠의원안 제20조(준용규정)³⁾이 다른 두 제정안에 존재하지 않고, ② 이만회의원안 제34조 및 박덕흠의원안 제23조(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⁴⁾이 김선교의원안에 존재하지 않음에 따른 것임.

한편, 세 건의 제정안은 기존 「농수산물자조금법」에서 농산물자조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면서 새로운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거나 기존 내용을 삭제함.

특히 ①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을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② 자조금의 형태를 의무자조금으로 통일함에 따라 임의자조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두드러짐.

세 건의 제정안 중 가장 많은 조항을 규정한 박덕흠의원안을 기준으로 기존 「농수산물자조금법」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3) 박덕흠의원안

제20조(준용규정) 자조금단체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4) 이만회의원안 (박덕흠의원안과 내용 동일함)

제34조(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 ① 자조금단체는 자조금단체 간 협력사업, 정보 교류 등을 통한 자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하여 자조금단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현행법과 제정안의 구성체계 비교(박덕흠의원안 기준) ＞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박덕흠의원안	비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신 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정안 신설 내용
<신 설>	제4조(법인격) 제5조(사업) 제6조(설립인가) 제7조(설립등기)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 제정안 신설 내용 - 제정안이 자조금단체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하여, 설립 관련 조항 마련(현행 → 「민법」)
<신 설>	제9조(회원)	- 제정안 신설 내용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총회의 설치 등)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1조(총회)	
제10조(총회의 운영)	<삭 제>	- 제정안 삭제 내용 (정관 위임)
제12조(대의원회)	제12조(대의원회)	
<신 설>	제13조(임원)	- 제정안 신설 내용
제13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4조(이사회)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제18조(사무국의 설치 등)	<삭 제>	- 제정안 삭제 내용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 이사회 (구성 등 정관 위임)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 제3항 및 제6항 제외 제21조의2(생산·유통 자율조절)	제15조(자조금 운용과 관리) 제16조(생산·유통 자율조절)	
<신 설>	제17조(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 제정안 신설 내용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외	제18조(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신 설>	제19조(청산 등) 제20조(준용규정)	- 제정안 신설 내용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제6항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제7항, 제8항	제21조(개선 등 조치명령) 제22조(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따른 수납 중지 등)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박덕흠의원안	비고
<신 설>	제23조(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	- 제정안 신설 내용
제3조(농수산자조금의 설치) 제5조(출연 및 지원)	제24조(자조금의 조성) 제25조(출연 또는 지원)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삭 제>	- 제정안 삭제 내용 ⁵⁾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제4조(자조금의 용도)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제26조(자조금의 재원) 제27조(자조금의 용도) 제28조(거출금의 산정기준) 제29조(거출금의 납부) 제30조(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제31조(거출금의 수납위탁)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제25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삭 제>	- 제정안 삭제 내용 (임의자조금 제도 폐지에 따른 삭제)
제31조(자조금 운용평가) 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3항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6항	제32조(자조금 운용 평가) 제33조(과오납금의 환급) 제34조(자조금회계의 구분) 제35조(공시)	
<신 설>	제36조(지역자조금)	- 제정안 신설 내용
제28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등) 제28조의2(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제37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제38조(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신 설>	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정안 신설 내용
<신 설>	제40조(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정안 신설 내용
제32조(지도·감독)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벌칙) 및 제35조(벌칙) 제36조(양벌규정) 제37조(과태료)	제41조(지도·감독)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3조(벌칙) 제44조(양벌규정) 제45조(과태료)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및 박덕흠의원안(2205702)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1. 27.

5) 현행법은 자조금단체에게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 자조금 설치의 2단계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나, 제정안은 ‘자조금단체 설립인가(안 제6조)’의 1단계 과정만을 거치므로 삭제함

제정안(박덕흠의원안 기준)의 45개조 중에서 신설되는 조는 총 15개조인데, 이는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은 7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제정안의 신설내용(박덕흠의원안 기준) >

연번	개정안(박덕흠의원안)	내용
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름
2	제4조(법인격) 제5조(사업) 제6조(설립인가) 제7조(설립등기)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제13조(임원) 제17조(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제19조(청산 등) 제20조(준용규정)	- 제정안이 자조금단체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법인격, 설립, 정관, 임원, 해산 및 청산 등에 관한 조항 마련 - 참고로 현행법은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므로, 「민법」상 조항이 적용됨
3	제9조(회원)	-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회원범위를 명확화
4	제23조(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	- 자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 및 지자체와의 상호협력증진을 위한 연합회의 설립근거 마련
5	제36조(지역자조금)	- 주된 생산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자조금 제도의 근거 마련
6	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자조금단체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근거 마련 - 참고로, 현재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의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지정(법적 근거 없음)
7	제40조(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자조금단체의 효율적 거출을 위한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및 박덕흠의원안(2205702)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2.

한편,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의 39개조 중에서 제정안에 반영되지 않고 삭제되는 내용의 조는 총 12개조인데, 이는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의 제정안 미반영(삭제) 내용 >

연번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내용
1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 현행법은 ① 자조금단체(비영리법인) 설립 → ② 자조금 설치의 2단계 구조이므로 자조금 설치 규정이 필요함 - 그러나 제정안은 자조금단체(특수법인) 설립의 단일 구조이므로, 별도의 자조금 설치 규정이 필요하지 않게 됨
2	제10조(총회의 운영)	- 현행법은 총회의 운영 관련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그러나 제정안은 이를 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위임하여 규정이 필요하지 않게 됨
3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제18조(사무국의 설치 등)	- 현행법은 자조금의 운용 업무를 맡는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이사회와는 별도로 두고 있음 - 그러나 제정안은 자조금의 운용 업무를 이사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므로, 자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게 됨
4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제25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 현행법은 자조금을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의 두 가지로 구분함 - 그러나 제정안은 임의자조금을 폐지하고 의무자조금만을 자조금으로 규정하여, 임의자조금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게 됨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및 박덕흠의원안(2205702)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2.

나.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제정안은 농산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명시함. 이에 따른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1장 총칙).

둘째, 자조금단체의 법인격, 자조금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설립에 관한 사항, 회원, 총회, 대의원회, 임원, 이사회, 청산 절차 등 자조금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장 자조금단체, 이만회의원안의 경우 제3장에 해당함).

셋째, 자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 하나의 자조금단체를 설립하여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운용·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자조금의 채원·용도, 거출금의 산정기준·한도·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장 자조금의 설치 및 운용, 이만회의원안의 경우 제2장에 해당함).

넷째,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는 원칙의 예외로 지역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조금단체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장 보칙).

다섯째, 이 법에 따른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함(안 제5장 벌칙).

한편,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비교할 때 세 건의 제정안이 구별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을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 없는⁶⁾ 자조금단체(법인)의 법인격, 설립, 해산, 준용규정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⁷⁾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7조, 제19조, 제20조 등).

둘째, 제정안은 현재 두 가지 종류(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로 이루어져 있는 자조금의 형태를 의무자조금의 한 가지 종류로 통합함에 따라,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상의 임의자조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제3장 -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셋째, 제정안은 자조금의 운용 기능을 맡는 조직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하는 한편, 이사회의 구성·자격·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위임함에 따라,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상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함(안 제14조,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제14조부터 제16조, 제18조 등).

넷째, 제정안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전담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제도 운영상에 새로이 필요한 규정 등을 신설함(안 제23조, 제36조, 제39조, 제40조 등)

6)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체계에서는 자조금단체의 설립 등에 「민법」상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

7) 박덕흠의원안을 기준으로 함, 이하 이 장에서 동일함

다.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자조금단체는 수급관리의 생산자주체로서 공적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적기능 강화에 수반되는 법적 성격 전환에 따라 수산자조금과의 분리가 필요함. 이와 같은 자조금제도 발전 방향에 부합하게 법률 체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정에 동의함.

2) 농산자조금 단체

현행 「농수산자조금법」을 통해 운영중인 30개 농산물 품목의 자조금단체 중, ① 인삼, ② 백합, ③ 키위, ④ 배, ⑤ 파프리카, ⑥ 사과, ⑦ 감귤, ⑧ 콩나물, ⑨ 참외, ⑩ 포도, ⑪ 복숭아, ⑫ 차, ⑬ 난의 13개 품목의 자조금단체로부터 법 제정에 관한 동의 의견이 제출되었음.

2. 법 제정 필요성

가. 농산자조금 운영 현황

WTO,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생산자 스스로 품목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2년에 자조금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후 「농수산물자조금법」 제정으로 2013년 3월 농산분야에 의무자조금 제도가 도입됨.

< 농산자조금 도입 경과 >

□ WTO,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생산자 스스로 품목 경쟁력 제고,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도록 자조금 제도 도입('92~)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92.4월)을 통해 임의자조금 제도 도입(제13조)

○ 이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내 자조금 관련 조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00.6월)

○ 개별법 제정('02년 축산, '13년 농산 등)을 통해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 현재 축산·농산·식품 자조금 총 43개(의무 28, 임의 15) 운영 중

* 농산 30개(의무 18, 임의 12), 축산 11(의무 9, 임의 2), 식품 2(의무 1, 임의 1)

❶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의무자조금 도입('02.5월)

- 이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거출금의 성격을 '임의거출금'과 '의무거출금'으로 구분('06.12월)

❷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산분야에도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13.3월) : 수산, 임산물 포괄

- 생산자 스스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단체에 생산·유통 자율조절 권한 부여(관련 법 제21조2조 신설, '18.5월)

▶ 수산물 : 10개품목(의무김·전복·광어·송어·향어·메기·관상어·민물장어, 임의굴·미역)
→ 해수부에서 운영 중

▶ 임산물 : 3개품목(의무뽕은감·자생란, 임의밤) → 농식품부에서 운영 중

❸ 식품산업 분야에도 개별법을 통해 일부 품목(김치, 전통주)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형태의 자조금 제도 도입('19년)

* 「김치산업진흥법」 및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19.12월)을 통해 사업자단체가 자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과 비교하여 ① 설치요건에 있어 의무자조금이 농수산업자의 50% 이상을 요구하는 등 보다 높은 대표성을 요구하고, ② 거출금⁸⁾ 납부 의무를 회원에게 부여함.

또한 ③ 거출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④ 자조금조직과 관련 기관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음.

<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의 주요 차이점 >

연번	구분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
1	설치 요건	농수산업자의 50% 이상 또는 해당 농산물 생산량, 생산액, 재배면적의 50% 초과	농산업자의 10% 서명
2	거출금 납부 의무	있음(미납시 과태료)	없음
3	거출한도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 이내	없음
4	자조금조직	총회, 대의원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대납기관, 수납기관	임의자조금위원회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3.

농산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이 조성된 농산물은 인삼, 친환경, 백합, 화훼, 콩나물, 파프리카, 키위, 감귤,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뽕은 감, 자생난, 차, 참외, 마늘, 양파 등 18개 품목임.

이중 친환경 농산물은 개별 품목이 아닌 점에서 다른 자조금 대상과 차이가 있음.

8) 거출: 같은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냄(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5. 2. 12. 확인)

임의자조금이 조성된 농산물은 단감, 무배추, 고추, 딸기, 밀, 가지,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밤, 버섯, 논콩 등 12개 품목임.

조성된 자조금은 주로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사업에 활용되고 있는데, 2023년 자조금단체의 평균 사업비 운영 비중은 ① 소비홍보(27.9%), ② 수급안정(27.2%), ③ 운영비(17.1%), ④ 교육 및 정보제공(14.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산자조금 운영 현황 >

- 수급불안에 대한 생산자 개별 대응의 한계 극복, 시장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00년 임의자조금, '13년 의무자조금 도입
 - 해당품목 재배면적의 50% 이상의 농가 또는 전체 농수산업자*의 50% 동의를 얻어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후, 해당단체가 의무자조금설치계획서를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 후 의무자조금 조성·운영
 - * (시행규칙 제2조) 품목별 농수산업자 범위에 1. 파프리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2. 인삼: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인삼제품류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입업자, 3. 참다래: 유통업자, 4. 감: 건조업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5. 전복: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5의2. 감굴: 유통업자 명시
 - 정부는 자조금단체가 농산물 수급조절, 품질향상, 소비촉진, 수출 활성화, 교육·홍보 등 사업 추진시 해당연도 사업비에 100~70% 매칭 지원
 - * 국고지원 : ('00) 20억원 → ('10) 84.6 → ('20) 91.3 → ('21) 105.8 → ('22) 124 → ('23) 131 → ('24) 131
 - '24년 12월 현재, 30개 품목 자조금 운영 중(의무 18, 임의 12)
 - * (의무 18) 인삼('15년) → 친환경('16) → 백합·키위·배·파프리카·사과·감굴·콩나물·참외·절화포도('17~'19) → 양파·마늘('20) → 뽕은감·복숭아('21) → 차·자생란('22)
 - * (임의 12) 단감, 무배추, 고추, 딸기, 밀, 가지,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정부 지원 중), 밤(정부 지원 중), 버섯('24년 승인), 논콩('24년 승인)
 - 의무자조금 전환을 전제로 최대 3년간 매년 약 1억원 지원
- 자조금은 주로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사업에 활용, 자조금단체 규모가 작을수록 운영비 비율이 높은 상황(최대 40%)
 - * '23년 자조금단체의 평균 사업비 운영 비중 : 소비홍보(27.9%), 수급안정(27.2%), 교육 및 정보제공(14.0%), 운영비(17.1%)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22년 농협경제지주에 설치)'를 통해 사무국 직원 교육 등 자조금 단체의 역량 강화 지원 중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품목별 농산자조금단체와 그 설립년도는 다음의 표와 같은데,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이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모두 사단법인 형태를 취함.

< 농산자조금단체 현황(의무 18개, 임의 12개) >

구분	농산물	자조금단체	설치년도(의무전환일)	재정지원여부
의무 자조금 (18개)	인삼	(사)한국인삼협회	2014 ('15. 5. 14.)	재정지원
	친환경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2015 ('16. 7. 1.)	
	백합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2009 ('17. 1. 1.)	
	키위	(사)한국키위연합회	2006 ('17. 2. 15.)	
	배	(사)한국배연합회	2010 ('17. 7. 6.)	
	파프리카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2000 ('17. 7. 14.)	
	사과	(사)한국사과연합회	2010 ('17. 7. 21.)	
	감귤	(사)제주감귤연합회	2008 ('17. 9. 29.)	
	콩나물	(사)대한두채협회	1994 ('17. 11. 30.)	
	참외	(사)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2006 ('18. 11. 8.)	
	절화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2019 ('19. 9. 18.)	
	포도	(사)한국포도협회	2010 ('19. 12. 30.)	
	마늘	(사)한국마늘연합회	2010 ('20. 7. 24.)	
	양파	(사)한국양파연합회	2010 ('20. 7. 24.)	
	뽕은감	(사)한국뽕은감협회	2018 ('21. 12. 22.)	
	복숭아	(사)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2008 ('21. 12. 28.)	
	차	(사)한국차자조회	2003 ('22. 7. 11.)	
	자생란	(사)한국난재배자협회	2003 ('22. 8. 22.)	
임의 자조금 (12개)	가지	(사)한국가지생산자협의회	2005	재정미지원
	오이	(사)한국오이생산자협의회	2008	
	풋고추	(사)한국풋고추생산자협의회	2012	
	블루베리	(사)한국블루베리연합회	2021	재정지원
	밤	(사)한국밤재배자협회	2022	

구분	농산물	자조금단체	설치년도(의무전환일)	재정지원여부
	단감	(사)한국단감연합회	2009	재정미지원
	무배추	(사)한국무배추생산자연협회	2010	
	고추	(사)한국고추산업연합회	2010	
	딸기	(사)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2006	
	밀	(사)국산밀산업협회	2010	
	버섯	(사)한국버섯생산자연협회	2024	재정지원
	논콩	(사)한국논콩자조회	2024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5. 2. 13.

< 농산자조금단체 중 의무자조금단체의 구성 현황 >

(단위: 명)

농산물	자조금단체	농업인수 (회원수)	대의원	관리위원	이사회 (감사 포함)
인삼	(사)한국인삼협회	18,240	72	13	15
친환경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45,227	154	21	27
백합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222	29	15	16
키위	(사)한국키위연합회	3,075	33	12	11
배	(사)한국배연합회	17,054	70	17	15
파프리카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620	36	15	15
사과	(사)한국사과연합회	50,045	74	21	11
감귤	(사)제주감귤연합회	18,145	80	21	15
콩나물	(사)대한두채협회	950	48	20	17
참외	(사)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6,856	55	21	26
절화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1,846	37	17	13
포도	(사)한국포도협회	33,612	74	14	13
마늘	(사)한국마늘연합회	52,272	118	17	17
양파	(사)한국양파연합회	27,867	113	22	16
뽕은감	(사)한국뽕은감협회	48,318	50	18	12
복숭아	(사)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43,286	73	18	16
차	(사)한국차자조회	2,238	-	-	-
자생란	(사)한국난재배자협회	309	32	11	1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28.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조성되는 자조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①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른 농산물자조금, ②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 ③ 「김치산업진흥법」 제19조,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¹⁰⁾ 및 「식품산업진흥법」 제18조의2¹¹⁾ 등에 따른 식품자조금이 해당함.

이 중에서 농산물자조금과 그 외 자조금(비교적 규모가 큰 축산자조금을 중심으로 함)의 운영체계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설치 측면에서, 현행 농산물자조금과 축산자조금은 품목별로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식품자조금은 임의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농산물자조금과 타 자조금의 설치 측면¹²⁾ 비교 >

☐ (설치) 자조금단체(농산) 및 축산단체(축산)가 품목별로 하나만 설치할 수 있으며(한우는 예외), 의무·임의 중 하나를 선택

9) 「김치산업 진흥법」

제19조(김치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김치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식품산업진흥법」

제18조의2(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식품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대표브랜드 홍보, 조사연구 및 수출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무자조금)** 자조금단체(농산) 또는 축산단체(축산)가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및 **대의원*의 찬성**을 얻은 후 자조금 설치
 - * 대의원은 선거를 통해 자조금 단체 또는 축산단체가 선출
- **(임의자조금)** 자조금단체(농산) 또는 축산단체(축산)가 **해당품목 100분의 10이상(농산) 또는 100분의 5이상(축산)의 서명**을 받아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
- **(김치·전통주) 사업자 단체**는 자조금(임의)을 조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생산액 또는 출고액이 일정비율* 이상이면 설립 가능**
 - * (김치)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들이 생산하는 생산액이 김치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김치 전체생산액의 30% 이상
 - * (전통주)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주 등의 출고액 합계가 해당 단체가 대표하는 주류 종류의 전체 출고액의 30% 이상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28.

둘째, 운영체계 측면에서, 현행 농산자조금과 축산자조금은 의무자조금에 대하여 ① 관리위원회가 자조금을 운용하고, ② 대의원회(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축산자조금의 경우 축산단체장 등이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생산자의 영향력이 보다 높음.

< 농산자조금과 타 자조금의 운영체계 측면 비교 >

- **(운영 체계)** 단체 내 의사결정 체계 및 우리부와 사업검토·승인 절차 등이 자조금별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다소 상이한 부분도 존재
 - (단체) 각 자조금별로 **관리위원회**를 두어 **계획수립·사업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의원회(총회)**에서 농축산업자 의견수렴 및 의사 결정
 - * (자조금 운영계획 수립 절차) ① 관리위원회 의결 → ② 대의원회 의결 → ③ 우리부 승인
 - 관리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가 대의원(농·축산업자)**으로 구성되어 **생산자 입장**을 주로 반영하고 있으며,
 - 특히, 축산분야는 대의원뿐만 아니라 **축산단체장 및 축산경제대표(농협)**도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생산자·단체의 영향력이 높은 구조**

12) 전체적인 비교 내용은 보고서 후면의 참고자료3을 참조

< 자조금 단체 內 관리체계 >		
구분	농산	축산
의무자조금	■ 농산업자 중에서 의장1, 부의장1, 감사2~5 등 총 20~200명 선출 * (임기) 의장, 부의장, 감사 2년, 대의원 4년	■ 축산업자 중에서 의장1, 부의장1, 감사2~5 등 총 30~250명 선출 * (임기) 의장, 부의장, 감사 2년, 대의원 4년 * (대의원 총수) 한우 250명 돼지 150명, 육계·산란계 80명, 육우 30명, 그 외 50명
	■ 의결사항 : 의무자조금 설치·폐지 찬반 투표, 의무거출금 금액, 사업 계획, 자금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 등	
	■ 의무자조금단체가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11~21명) *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2년, 위원 4년 - 대의원, 관계공무원, 수납기관 대표, 소비자단체, 관련전문가 등	■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가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17~25명) *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2년, 위원 4년 - 대의원, 관계공무원, 축산단체장, 축산경제대표(농협), 수납기관 대표, 소비자단체, 관련전문가 등
	■ 역할 : 의무거출금 수납, 자조금 운용·관리·집행 ■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	
	■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보조	
사무국	■ 필요시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여 사무국 운영 가능	-
임의자조금 위원회	■ 자조금 폐지 및 거출금액, 사업계획 수립·결산 등의 심의·의결	
※식품 (김치)	■ 자조금 단체 內 운영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음 ■ 단, 자체 운영규정을 통해 관리위원회 및 관리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28.

셋째, 의무자조금의 평가체계에 있어 농산자조금은 운영실적 평가와 외부전문기관의 성과평가 절차를 거치나, 축산자조금은 별도의 성과평가 체계가 없음. 식품자조금은 의무자조금이 아니므로 평가를 거치지 않음.

< 농산자조금과 타 자조금의 평가체계 비교 >

□ (지도·감독 및 평가·환류 체계)

< 자조금 관련 지도·감독 및 평가·환류 체계 >

구분	농산	축산	식품
평가체계 (의무자조금)	(매년) 운영실적 평가 → 보조금차등지원 (매칭비율 : 100~80%) (격년) 외부전문기관 성 과 평가 → 업무 개선 추진	없음 * 성과평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20.8~'21.1) 추진	해당없음 (임의자조금 형태) * 단, 사업 개선을 위 한 성과평가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 대 기 형성
지도·감독	자조금 업무 관련 필요사항 보고 및 서류제 출 지시 가능, 장부·서류 검사 가능		보조금 업무 관련 필 요사항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가능
	(근거조항 없음) 필요시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추진하 고, 이행되지 않을시 지원중단 등 지도·감독할 권한		
보조금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 가능 * 자조금법에는 별도의 환수규정 없음		
의무자조금 지원중단 및 직권폐지	가능 * 의무자조금 설치승인 요건 미충족시 지원 중단, 개선권고, 직권 폐지 가능 (현행법 제21조제6항)	근거조항 없음	해당없음 (임의자조금)
임의→ 의무 자조금 유도	3년간 의무전환 조건으로 한시적 지원 (연 1억원 한도)	없음 (별도 조건없이 지속 지원)	없음 (별도 조건없이 지속 지원)
거출금 미납·거부시 제재	정책사업 지원 배제 등 미납자 지원 제한('21~)	정책사업 관련 제재 없음	해당없음 (임의자조금 형태)
	과태료 부과 가능 * 단, 부과사례 없음		
벌칙조항	■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 자조금 용도 위반 - 의무거출금 수납의뢰 거부 또는 수납업무 중단 - 의무자조금 찬반투표 미실시 폐지, 유사명칭 사용, 의무자조금 폐지 후 수납 지속 - (농산) 운용평가보고서 거짓제출 또는 평가받지 않음 ■ 과태료 부과(3백만원 이하) - 납부일자 이내 의무거출금 미납부 - 의무자조금 조성 및 운용사항 미공시 또는 거짓 공시 -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거짓보고 및 허위서류 제출, 감사의 거부·방해·기피 - (농산) 운용평가 결과보고서 미제출, 의무자조 금 생산·유통 자율조절 위반		없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28.

넷째,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농산자조금은 자조금단체(「민법」상 비영리법인)가 법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나, 축산자조금은 법인격이 없는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자조금단체의 역할을 수행함.

< 농산자조금과 타 자조금의 운영주체 측면 비교 >

□ (운영주체) 자조금단체와 관리위원회간 위상정립 관련 혼선 존재

○ 자조금 구성의 모체가 되는 ‘비영리법인’과 관리위원회 간 상호 영향력 및 위상정립과 관련한 쟁점이 농산·축산에서 다른 양상으로 존재

* (농산) ‘자조금 단체’인 비영리법인이 법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리위원회(법인격 없음)는 자조금 실무업무를 총괄하는 구조

** (축산) 관리위원회(법인격 없음)가 실질적인 자조금단체 역할을 수행하여 비영리 개인사업자로 등록 및 운영됨에 따라, 자조금을 관리위원장 개인 명의로 운용 중

< 농산·축산 자조금 운영주체 구성과정 및 현황 비교 >

	농산분야	축산분야
구 성 준 비	■ 관련 협회들이 협력 및 논의를 거쳐 대표성 있는 ‘자조금 단체’를 정하여 (신규법인 설립 또는 기존 단체가 주도) 품목자조금 구성을 준비	■ 축산협회가 품목자조금 구성을 준비
구 성 후	의무자조금단체 (비영리 사단법인) 이사회(필요시) * 협회 행정사항 등을 일부 수행 총회 또는 대의원회 (최고 의결기관) 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 협회장이 자조금단체장 역할을 수행하며, 대의원회 의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다수 (관리위원회는 자조금운영 실무총괄)	축산협회 (비영리 사단법인) 총회 (협회 관련의결) 대의원회 (자조금 관련의결) 이사회 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사무국 ■ 협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장이 자조금단체장 역할을 수행, 대의원회 의장은 회의 진행·관리에 역할이 국한되는 경향

○ (식품) 제조업 특성에 맞는 자조금 정책방향 및 관련제도 미흡

- (정책방향) 개별법에 따라 김치·전통주 자조금이 조성되고 있으나, 산업진흥과 자조금 본연의 역할간 구분이 모호

* 식품분야 자조금 제도가 김치(임의), 전통주(‘21년 발족 예정)에 도입되어 있으나, 농산·축산과 대상·목적 등이 매우 상이하여 별도 방향 마련 필요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28.

나. 법 제정 필요성

정부는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라 농가의 자조금 납부에 대하여 국고 매칭을 지원하고, 자조금단체는 해당 재원으로 수급관리·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수행함.

다만, 현재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은 재배면적 조절이 어려운 과수 품목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수급조절보다는 소비촉진·홍보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 중임.

또한, 자조금단체는 인력 및 자본력의 부족으로 수급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23년말 기준 18개 의무자조금단체의 ① 직원이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평균 3.44명이고, ② 자조금 거출액도 평균 약 9억 6,200만원에 불과함.

< 의무자조금단체 거출액 및 직원 수 현황(2023년말 기준) >

(단위: 백만원, 명)

연번	농산물	자조금단체	거출액	직원 수
1	인삼	(사)한국인삼협회	1,029	5
2	친환경농산물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2,972	7
3	백합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620	2
4	키위	(사)한국키위연합회	235	2
5	배	(사)한국배연합회	909	3
6	파프리카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1,215	5
7	사과	(사)한국사과연합회	2,044	4
8	감귤	(사)제주감귤연합회	2,231	4

연번	농산물	자조금단체	거출액	직원 수
9	콩나물	(사)대한두채협회	203	5
10	참외	(사)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379	3
11	절화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933	2
12	포도	(사)한국포도협회	1,732	2
13	마늘	(사)한국마늘연합회	995	5
14	양파	(사)한국양파연합회	563	4
15	뽕은감	(사)한국뽕은감협회	295	3
16	복숭아	(사)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648	3
17	차	(사)한국차자조회	74	1
18	자생란	(사)한국난재배자협회	246	2
평균			962	3.44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5. 2. 13.

자조금단체의 법적지위가 사(私)법인(민법상 비영리법인)임에 따라서 수급조절 등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법적 정당성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수급관리 생산자 주체로서의 자조금단체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안과 같이 「농수산물자조금법」에서 농산물자조금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전환하고 자조금단체의 공적 역할을 명확히 하며 각 품목에 대한 대표성·책임성을 바탕으로 거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하에서는 제정안 입법 시 검토되어야 할 주요 세부내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3. 조문별 검토

가. 총칙 규정

제정안은 기존에 농산자조금 관련 사항을 규율하던 「농수산물자조금법」을 바탕으로 총칙규정에 법률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농산업 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농업 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농산업 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자조금단체”란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 등이 <u>제5조제1호</u> 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농산자조금을 조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자조금단체”란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 등이 <u>제7조</u> 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농산자조금 을 조성·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자조금단체”란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 등이 <u>제5조제1호</u> 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농산자조금을 조성·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4.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5. “거출금”이란 자조금단체의 회원이 <u>제5조제1호</u>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4.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5. “거출금”이란 자조금단체의 회원이 <u>제7조</u>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4.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5. “거출금”이란 자조금단체의 회원이 <u>제27조</u>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자조금을 둘러싼 주요 사항들의 법적 성격이나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제정안에 동의함.

다만, 제정안 제1조의 목적 규정에서 김선교의원안과 박덕흠의원안은 ‘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만희의원안은 ‘농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차이가 있음.

농산업의 개념은 모호하므로, 생산자 중심으로 조성하는 자조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농업’이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2) 검토의견

(1) 제1조: 목적

제정안은 법률의 목적을 ①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경쟁력 제고 도모, ②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③ 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농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제정안의 차이>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정안의 목적에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경쟁력 제고 도모’를 추가함 -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으로 변경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제정안은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의 목적과 비교하여 ①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경쟁력 제고 도모를 추가하고, ②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서 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변경함.

제정안은 안 제27조에서 자조금의 용도를 농산물의 수급 안정 사업,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농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자조금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따라서 제정안에 따른 자조금단체가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의 목적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김선교의원안과 박덕흠의원안은 ‘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이만희의원안은 ‘농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는 차이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유사 개념인 ‘수산업’의 경우, 수산업 관련 기본법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과 달리,¹³⁾ 농업에 관한 기본법인

1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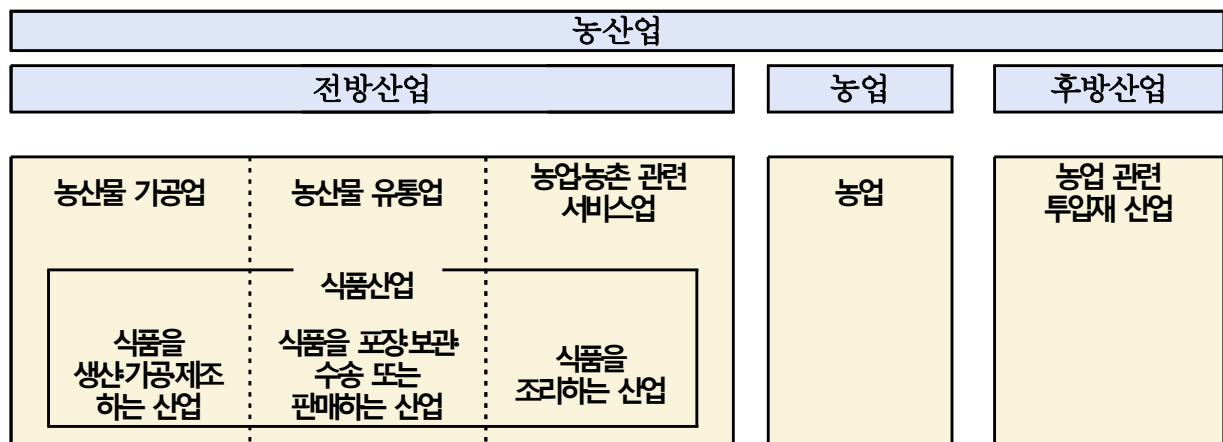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산업’이 아닌 ‘농업’에 관하여만 규정함.¹⁴⁾

다만,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농산업’의 개념을 신설하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431)”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개정안은 “농산업”을 ① 농업, ② 농산물 가공업, ③ 농산물 유통업, ④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⑤ 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 ⑥ 그 밖에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으로 정의하는바, 동 개정안의 개정 추이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농업, 식품산업 및 농산업 개념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024. 10. 28.

1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제2조: 정의

제정안은 법률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자조금단체”란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 등이 <u>제5조제1호</u>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4.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자조금단체”란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 등이 <u>제7조</u>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4.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자조금단체”란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 등이 <u>제5조제1호</u>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4.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다.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5. “거출금”이란 자조금단체의 회원이 <u>제5조제1호</u>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다.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5. “거출금”이란 자조금단체의 회원이 <u>제7조</u>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다.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5. “거출금”이란 자조금단체의 회원이 <u>제27조</u>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제정안의 차이 >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 각 호 순서 변경
4. “농수산물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1. “농산물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 농산물자조금의 의미를 일부 수정하여 단순 명료하게 표현
3. “자조금단체”란 제4호에 따른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자조금단체”란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 등이 제5조제1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농산물자조금을 조성·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자조금단체의 법인격은 제정안 제4조에서 법인으로 설정하며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1. “농수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 농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물 소관사항을 삭제 - 제외사항인 축산자조금에 대한 내용은 유지
2. “농수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그 밖에 농수산물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4.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농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물 소관사항을 삭제
5. “의무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거출금”이란 자조금단체의 회원이 제2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현행법은 특정 품목의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등을 부령으로 정함 - 안 제9조의 회원 규정에서 당연회원을 농업인등으로 한정함에 따라 부령위임 규정 삭제
6. “임의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삭 제>		- 농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임의자조금이 폐지되어, 의무거출금 용어를 거출금으로 수정
7.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이란 의무거출금을 주요 채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삭 제>		- 농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임의자조금은 폐지되고 의무자조금만 농산자조금으로 인정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8.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이란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삭 제>		
9. “의무자조금단체”란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삭 제>		-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임의자조금은 폐지되고 의무자조금만 농산물자조금으로 인정
10. “임의자조금단체”란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삭 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제정안¹⁵⁾은 ① 농산물자조금에 관한 사항을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서 별도의 법률로 분리함에 따라 정의규정에서 해양수산물 소관사항을 삭제하고,¹⁶⁾ ②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 변화, 임의자조금의 삭제, 회원 범위 명확화 등 제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사항에 맞추어 정의규정을 변경하여 안 제2조에 반영함.

제정안을 통한 농산물자조금에 관한 별도의 법률 분리와 제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정의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15) 안 제2조의 내용 중 ① 자조금단체의 법인격 정의와 ② 임의자조금 관련 사항의 포함 여부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토는 나.와 마.에서 후술하도록 함

16) 참고로 제정안은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서 농산물자조금에 관한 사항만을 분리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신설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 내용을 담고 있는 조의 대부분에서 계속하여 해양수산물 소관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등장함. 따라서 후술할 내용에서는 해양수산물 소관사항 삭제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이사항이 없다면 언급하지 않고자 함

(3) 제3조 신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정안은 농산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정안을 농산자조금에 관한 일반법으로 규정함.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여러 개의 개별 법률 간의 적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 해석·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나.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 전환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을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과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4조(법인격) ① 자조금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자조금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업)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5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로 정한 사업 2.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6조(법인격) ① 자조금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자조금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사업)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7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로 정한 사업 2.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4조(법인격) ① 자조금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자조금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업)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7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로 정한 사업 2. 국가, 지방자치단체, <u>공공기관</u> 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관련 조문 제25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2. 제16조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3.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4. 회원, 소비자, 제27조제3	※ 관련 조문 제7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2. 제28조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3.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4. 회원, 소비자, 대납기관	※ 관련 조문 제27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2. 제16조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3.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4. 회원, 소비자, 제29조에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6.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동향,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7. 거출금 납부를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자조금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6.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동향,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7. 거출금 납부를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자조금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따른 대납기관 및 제31조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6.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동향,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7. 거출금 납부를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자조금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설립인가) ①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제9조제2항에 따른 당연회원의 자격을 가진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과 자조금단체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설립인가) ①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제21조제2항에 따른 당연회원의 자격을 가진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과 자조금단체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인가) ①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제9조제2항에 따른 당연회원의 자격을 가진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과 자조금단체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등기) ① 자조금단체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제19조(설립등기) ① 자조금단체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제7조(설립등기) ① 자조금단체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성립한다. ② 자조금단체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자조금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정수 및 임기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 7. 거출금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 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자산의 처리방법 10.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써 성립한다. ② 자조금단체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관의 기재사항) 자조금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정수 및 임기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 7. 거출금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 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자산의 처리방법 10.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성립한다. ② 자조금단체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자조금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정수 및 임기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 7. 거출금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 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자산의 처리방법 10.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이 전환됨으로써, 자조금단체는 해당 품목산업에 대한 대표성·책임성을 가지고 회원으로부터 거출한 회비를 활용하여 품목 산업발전을 위한 활동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제정안에 동의함.

또한,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자조금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으나, 자조금단체가 공법인으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자조금단체는 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자조금은 해당 용도에 한정 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에 동의함.

2) 검토의견

(1) 안 제4조 신설: 법인격

제정안은 자조금단체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신설).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4조(법인격) ① 자조금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자조금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법인격) ① 자조금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자조금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법인격) ① 자조금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자조금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자조금단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¹⁷⁾¹⁸⁾ 해당 품목의 수급조절과 이를 위한 특수한 기금인 자조금의 운영을 맡도록 함.

이에 따라 자조금단체는 그 설립의 법적 근거가 「민법」, 조직·사업의 법적 근거가 「농수산물자조금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이원적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17)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조금단체”란 제4호에 따른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18)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법의 취지와 규율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다양한 법체계상의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자조금 운영과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의 중요한 국가기능을 사적 자치(自治)가 적용되는 민간기관인 자조금단체에 사실상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 지적¹⁹⁾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에 대하여 개별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는 특수법인²⁰⁾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조금단체의 설립 근거와 조직·사업의 법적 근거를 하나의 법률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은 「민법」 제31조²¹⁾에 따라 법인 성립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안 제4조제2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으로,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을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함에 있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자조금단체 설립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절차가 간소화²²⁾되는 장점이 있으며, 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 산업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회비인 자조금을 거출 및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백해질 것으로 보임.

19) 농수축산신문, 「[사설]농산의무자조금 도입 10년, 새로운 모습이 필요할 때」, 2023. 11. 7.
URL :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677>

20) 특수법인의 일반적 성격

- ① 개별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법인격 부여(법률 자체에 의한 설립)
- ② 출자·출연·보조금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및 업무 위탁 수행
- ③ 정부 위탁 업무가 아닌 고유 업무의 내용도 비영리성, 공공성, 공익적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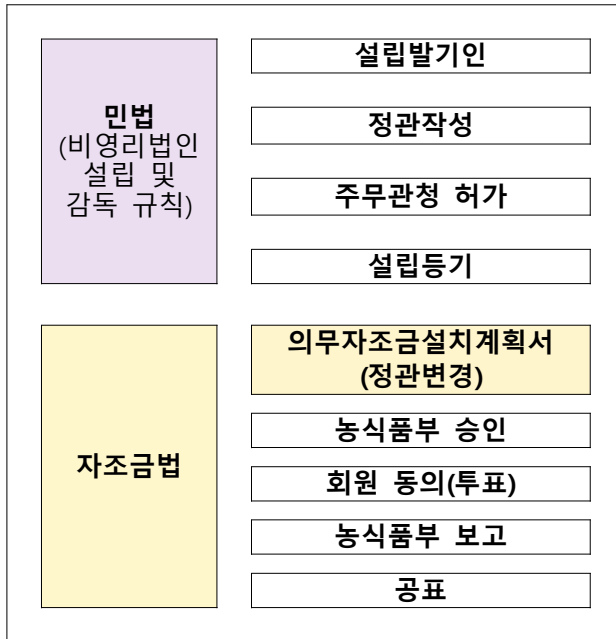
21)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2) 현재는 「민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농수산물자조금법」 제6조에 따라 (의무)자조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해당 농수산업자의 투표를 통해 자조금을 설치함.

< 농산 자조금단체 설립 절차 >

< 현행 >



< 개선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2) 안 제5조 신설: 사업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 신설).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5조(사업)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5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로 정한 사업 2.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7조(사업)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7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로 정한 사업 2.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5조(사업)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7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로 정한 사업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관련 조문 제25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2. 제16조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3.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4. 회원, 소비자, 제27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6.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동향,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7. 거출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자조금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관련 조문 제7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2. 제28조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3.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4. 회원, 소비자,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6.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동향,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7. 거출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자조금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관련 조문 제27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2. 제16조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3.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4. 회원, 소비자, 제29조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31조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6.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동향,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7. 거출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자조금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자조금단체의 사업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데, 이에 따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인 자조금단체는 정관에 따른 사업과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른 자조금 용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제정안은 자조금단체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사업 범위를 자조금 용도의 사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 공적 사업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특수법인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국가적 정책이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민법」 또는 「상법」 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근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는 점²³⁾을 고려하면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세 건의 제정안은 위탁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상이하게 규정하는데, 자조금단체의 공적사업 범위 확대를 위하여는 박덕흠의원안과 같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까지도 자조금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임.

< 세 건의 제정안의 위탁사업 범위 비교 >

구분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위탁사업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위탁사업

자료: 제정안(2205471, 2205614, 2205702)을 바탕으로 작성, 2025. 2. 7.

23)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529, 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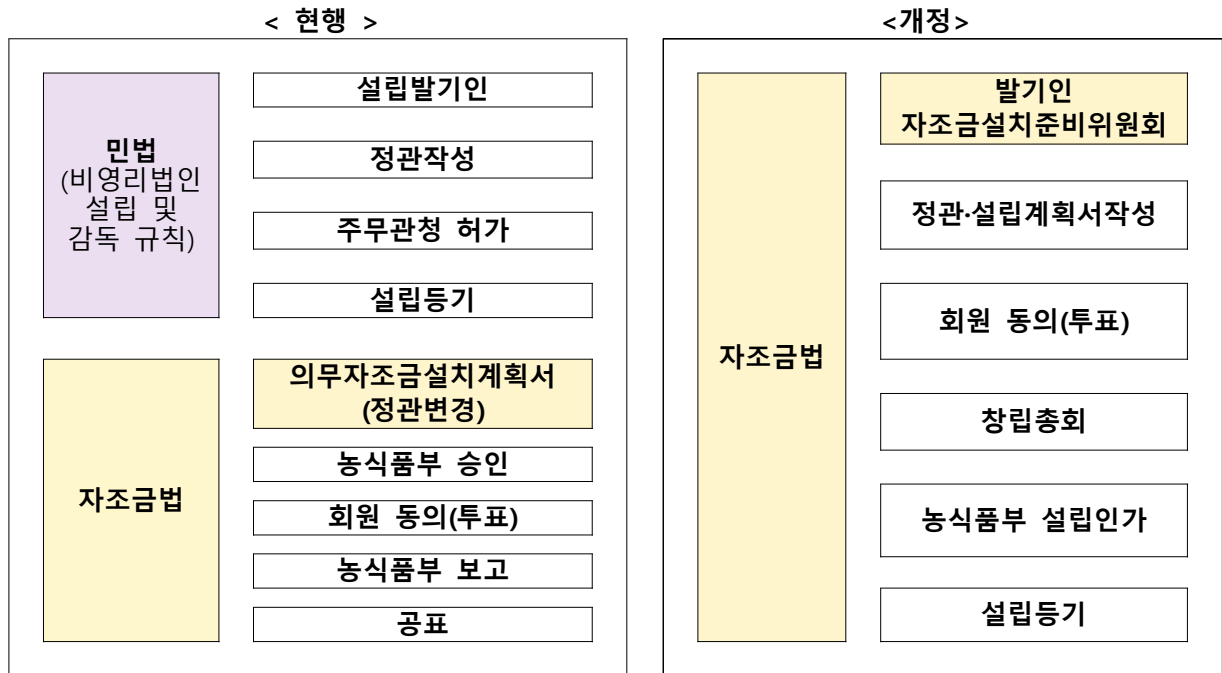
(3) 안 제6조 신설: 설립인가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설립을 위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신설).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6조(설립인가) ①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제9조제2항에 따른 당연회원의 자격을 가진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과 자조금단체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설립인가) ①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제21조제2항에 따른 당연회원의 자격을 가진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과 자조금단체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인가) ①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제9조제2항에 따른 당연회원의 자격을 가진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과 자조금단체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자조금단체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설립절차를 정하려는 것으로, 자조금단체가 되기 위하여는 안 제6조에 따라 ① 일정 수 이상의 당연회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과 자조금단체설립계획서를 작성하고, ② 창립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 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농산 자조금단체 설립 절차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정안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이 변화하여, 그에 상응하는 설립절차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승인 요건을 부령으로 위임하나,²⁴⁾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요건이나 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24)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5조(의무농수산물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승인할 때에는 자조금단체의 대표성과 사업역량,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승인요건 중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가 해당 농수산물의 전체 농수산업자 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할 것
2.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생산량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액 또는 재배면적이 전국 생산량, 생산액 또는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퍼센트를 초과할 것

이에 따라 인가 여부에 관한 예측 가능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임.

한편, 세 건의 개정안은 설립인가에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상이하게 규정하는데, 이만희의원안과 박덕흠의원안은 50인, 김선교의원안은 30인을 각각 규정함.

< 세 건의 제정안의 설립인가 요구 발기인 수 비교 >

구분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발기인 수	3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자료: 제정안(2205471, 2205614, 2205702)을 바탕으로 작성, 2025. 2. 7.

현재 18개 의무자조금단체의 설립 시 발기인 수는 ① 30인 미만이 4개 단체, ② 30인 이상 50인 미만이 8개 단체, ③ 50인 이상이 6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음.

< 18개 의무자조금단체의 설립 시 발기인 수 >

구분	연번	농산물명	자조금단체 명	발기인 수
30인 미만	1	배	(사)한국배연합회	14인
	2	친환경농산물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17인
	3	백합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29인
	4	파프리카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29인

구분	연번	농산물명	자조금단체 명	발기인 수
30인 이상 50인 미만	1	차	(사)한국차자조회	31인
	2	자생란	(사)한국난재배자협회	33인
	3	인삼	(사)한국인삼협회	33인
	4	키위	(사)한국키위연합회	37인
	5	절화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39인
	6	참회	(사)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48인
	7	콩나물	(사)대한두채협회	49인
	8	복숭아	(사)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49인
50인 이상	1	뽕은감	(사)한국뽕은감협회	50인
	2	포도	(사)한국포도협회	75인
	3	사과	(사)한국사과연합회	80인
	4	감귤	(사)제주감귤연합회	80인
	5	양파	(사)한국양파연합회	118인
	6	마늘	(사)한국마늘연합회	119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5. 2. 13.

발기인 수 기준을 만족하는 의무자조금단체가 ① 30인 이상으로 할 경우 77.8%(14개 단체), ② 50인 이상으로 할 경우 33.3%(6개 단체)인 점을 고려할 때,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는 30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4) 안 제7조 신설: 설립등기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신설).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7조(설립등기) ① 자조금단체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조금단체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설립등기) ① 자조금단체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조금단체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설립등기) ① 자조금단체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조금단체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법인이 법률에 의하여 직접 법인격을 부여받았더라도, 법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하여는 그 법인의 존재를 사회 구성원에게 공시하는 행위로서의 등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²⁵⁾

따라서 자조금단체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고, 안 제7조제1항의 경우 법인설립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민법」 제33조²⁶⁾와 비교하였을 때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안 제7조제2항과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의 경우 ①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만을 위임하거나, ②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임함.

25)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5, p. 535.

26)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설립등기 관련 유사입법례 >

□ 한국환경공단법

제5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법인격 등)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3.

가령,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수법인²⁷⁾으로서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이전·변경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²⁸⁾

다만, 그 내용이 「민법」상의 규정과 크게 차이하지 않는 점,²⁹⁾ 제정안은 안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대하여 「민법」상의 규정을 준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 위임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임.

27) 다만, 자조금단체(「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와 달리 서울대학교는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는 차이가 있음

2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이전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29) 「민법」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안 제8조 신설: 정관 기재사항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정관 기재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자조금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정수 및 임기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 7. 거출금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 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자산의 처리방법 10.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정관의 기재사항) 자조금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정수 및 임기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 7. 거출금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 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자산의 처리방법 10.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자조금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정수 및 임기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 7. 거출금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 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자산의 처리방법 10.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세 건의 제정안 모두 11개의 사항을 자조금단체의 정관 기재사항으로 동일하게 규정함.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하여 목적, 명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는데,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기재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자조금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민법」 과 제정안 비교 >

구 분	「민법」 제40조	제정안
정관 기재사항	- 목적 - 명칭	- 목적 및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거출금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임원의 선출, 정수 및 임기에 관한 사항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존립 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자산의 처리방법
		- 사업에 관한 사항 -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및 제정안(2205471, 2205614, 2205702)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4.

다. 자조금단체의 회원 범위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회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단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9조(회원) ①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은 당연회원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자조금단체가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정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출금을 납부하고 자조금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조금단체를 설립할 수 없으며, 농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자조금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회원) ①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은 당연회원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자조금단체가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정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출금을 납부하고 자조금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조금단체를 설립할 수 없으며, 농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자조금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회원) ①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은 당연회원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자조금단체가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정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출금을 납부하고 자조금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조금단체를 설립할 수 없으며, 농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자조금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자조금단체의 회원을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규정하는 제정안에 동의함.

2) 검토의견

(1) 제9조 신설: 회원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을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 신설).

김전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9조(회원) ①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은 당연회원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자조금단체가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정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출금을 납부하고 자조금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1조(회원) ①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은 당연회원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자조금단체가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정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출금을 납부하고 자조금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 ①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은 당연회원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자조금단체가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정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출금을 납부하고 자조금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제2조제3호³⁰⁾는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조금단체의 회원으로 규정하여, ‘농수산업자’를 자조금단체 회원의 자격으로 두고 있음.

「농수산물자조금법」은 농수산업자를 ① 농어업인, ② 농어업경영체,

30) 「농수산물자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조금단체”란 제4호에 따른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③ 생산자단체와 ④ 그 밖에 농수산물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제2조제2호 각 목³¹⁾에서 열거함.

또한, 「농수산물자조금법 시행규칙」은 일부 품목(인삼, 파프리카, 참다래, 감귤 등)에 대해서만 ⑤ 생산·유통 단계에서의 다양한 주체(농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수입업자 등)를 농수산업자 범위에 포함함.³²⁾

그 외의 대다수 품목에서는 농수산업자를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생산자를 중심으로 규정함.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이와 같이 자조금단체의 회원 자격이 농수산업자라는 것만을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가 자조금단체의 회원인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그런데, 자조금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는 개별 규정에서

31) 「농수산물자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수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그 밖에 농수산물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32) 「농수산물자조금법 시행규칙」

제2조(품목별 농수산업자)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품목별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파프리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2. 인삼: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인삼제품류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입업자
3. 참다래: 유통업자
4. 김: 건조업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5. 진북: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5의2. 감귤: 유통업자
6.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임의자조금단체”라 한다)가 요청하여 농수산물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는 ‘회원’ 대신 구체적 의미가 서로 다른 ‘농수산업자’(제8조, 제10조, 제12조 등), ‘해당 농산물의 농수산업자’(제6조, 제9조, 제21조의2 등) 또는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제6조, 제21조, 제28조의2 등)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여, 회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을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함. 당연회원은 ‘농업인등’³³⁾의 생산자 중심으로 규정하고, 특별회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자조금단체가 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는 회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당연회원을 생산자 중심으로 규정함에 따라 생산자 위주의 자조금단체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① 자조금단체 설립이 용이하게 되고, ② 참여주체 간 갈등의 소지를 감소시키며, ③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생산자 조직화 체계의 구축이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3) 세 제정안 모두에서 ‘농업인등’은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를 의미함

< 자조금단체 ‘회원’의 범위 >

<현 행>	<제정안>				
농수산업자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기타 제조·가공·저장·유통·수출입 등 의무자조금 * 농수산업자 50% 이상 동의 임의자조금 *농수산업자 10% 이상 동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 color: blue; font-weight: bold;">당연회원(농업인등)</th><th style="text-align: center; color: blue; font-weight: bold;">특별회원</th></tr> <tr> <td style="padding: 5px;"> * 해당 품목의 생산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td><td style="padding: 5px;"> * 제조·가공·저장·유통·수출입·종자 등 자조금단체 정관으로 정하는 자 </td></tr> </table>	당연회원(농업인등)	특별회원	* 해당 품목의 생산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제조·가공·저장·유통·수출입·종자 등 자조금단체 정관으로 정하는 자
당연회원(농업인등)	특별회원				
* 해당 품목의 생산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제조·가공·저장·유통·수출입·종자 등 자조금단체 정관으로 정하는 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한편,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당연회원을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으로 규정하여,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 전부를 자조금단체의 회원으로 규정함.

이는 현행 「농수산자조금법」이 자조금단체의 회원을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거출금의 납부의무와 자조금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참여의무를 부과함.

이는 제정안이 현행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자조금 중 임의자조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의무자조금에 대한 사항만을 유지하므로,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관한 사항 또한 이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임.

(2)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자조금단체³⁴⁾를 설립할 수 없고,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조금단체를 설립할 수 없으며, 농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자조금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조금단체를 설립할 수 없으며, 농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자조금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조금단체를 설립할 수 없으며, 농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자조금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관련 조문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관련 조문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관련 조문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제정안의 차이>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조금단체를 설립할 수 없으며, 농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자조금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농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농산자조금이 아니면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34) 참고로 안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 ‘자조금단체’를 농산자조금을 조성 및 운용하는 단체로 규정하므로, 축산자조금 등 다른 종류 자조금은 포함되지 않음

제정안은 농산자조금에 관한 사항을 현행 「농수산자조금법」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 제30조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서 ① 자조금 외에 자조금단체의 유사명칭도 사용할 수 없고,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조금단체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안 제10조로 반영함.

우선 제정안은 자조금단체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하여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조금단체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자조금 외에 자조금단체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자조금단체의 유사명칭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자조금의 유사명칭 사용이 전제되므로, 현행법과 같이 자조금의 유사명칭 사용금지만을 규정하더라도 자조금단체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할 것임.

제정안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제정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라. 자조금단체의 지배구조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기관으로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자조금단체로 하여금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자조금단체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11조(총회) ① 자조금단체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조금단체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3. 거출금의 산정기준, 금액 및 납부면제의 기준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 7. 제16조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의 결정 8. 총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총회는 회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제23조(총회) ① 자조금단체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조금단체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3. 거출금의 산정기준, 금액 및 납부면제의 기준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 7. 제28조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의 결정 8. 총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총회는 회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제11조(총회) ① 자조금단체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조금단체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3. 거출금의 산정기준, 금액 및 납부면제의 기준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 7. 제16조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의 결정 8. 총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총회는 회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대의원회) ① 회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자조금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 등록 및 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 ① 자조금단체의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수, 임기, 권한 및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이사회) ① 자조금단체의 사업 수행과 자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대의원회) 회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자조금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 등록 및 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5조(임원) ① 자조금단체의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수, 임기, 권한 및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이사회) ① 자조금단체의 사업 수행과 자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대의원회) ① 회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자조금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 등록 및 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 ① 자조금단체의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수, 임기, 권한 및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이사회) ① 자조금단체의 사업 수행과 자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소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구성, 이사의 자격,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자조금 운용과 관리) ① 자조금단체는 매년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지출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조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지출금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구성, 이사의 자격,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자조금 운용과 관리) ① 자조금단체는 매년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지출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조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지출금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속 공무원 등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구성, 이사의 자격,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자조금 운용과 관리) ① 자조금단체는 매년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지출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조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지출금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자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생산·유통 자율조절) ①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이하 “생산·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경작 및 출하 신고 2.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 규격 설정 3. 수출 등 유통조직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자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생산·유통 자율조절) ①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이하 “생산·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경작 및 출하 신고 2.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 규격 설정 3. 수출 등 유통조직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자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생산·유통 자율조절) ①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이하 “생산·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경작 및 출하 신고 2.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 규격 설정 3. 수출 등 유통조직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설립 인가의 취소 제18조(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① 회원은 제17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한다.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설립 인가의 취소 제30조(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① 회원은 제29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한다.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설립 인가의 취소 제18조(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① 회원은 제17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한다.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공표하여야 한다.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다. 제19조(청산 등) ① 자조금단체가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총회의 회장이 청산인(清算人)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開議)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④ 해산한 자조금단체의 청산 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20조(개선 등 조치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제31조(청산 등) ① 자조금단체가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총회의 회장이 청산인(清算人)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開議)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④ 해산한 자조금단체의 청산 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32조(개선 등 조치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다. 제19조(청산 등) ① 자조금단체가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총회의 회장이 청산인(清算人)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開議)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④ 해산한 자조금단체의 청산 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20조(준용규정) 자조금단체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21조(개선 등 조치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생한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조금단체가 설립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자조금단체의 거출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출연 또는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해당 자조금이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따른 수납중지 등) ① 회장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의결된 경우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회원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자조금단체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생한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조금단체가 설립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자조금단체의 거출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출연 또는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해당 자조금이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따른 수납중지 등) ① 회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의결된 경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회원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자조금단체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생한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조금단체가 설립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자조금단체의 거출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출연 또는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해당 자조금이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따른 수납중지 등) ① 회장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의결된 경우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회원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자조금단체 또는 수납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거출금 수납을 중지시켜야 한다.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의결되기 전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이미 납부된 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결정된 때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 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거출금 수납을 중지시켜야 한다. ②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의결되기 전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이미 납부된 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결정된 때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 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4조(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 ① 자조금단체는 자조금단체 간 협력사업, 정보교류 등을 통한 자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관을 통한 거출금 수납을 중지시켜야 한다.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의결되기 전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이미 납부된 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제18조제3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결정된 때에는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 ① 자조금단체는 자조금단체 간 협력사업, 정보교류 등을 통한 자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현행법상 자조금단체 이사회와 관리위원회의 기능 중복 문제 해소를 위하여, ‘이사회’로 집행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감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는데, 자조금은 투명한 조성·운용·관리가 중요하므로 감사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집행기관을 이사회로 일원화하고, 임원에 감사를 명시하는 등의 제정안에 대하여 수용함.

2) 검토의견

(1) 안 제11조: 총회

제정안은 회원으로 구성되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회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11조(총회) ① 자조금단체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조금단체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3. 거출금의 산정기준, 금액 및 납부면제의 기준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 7. 제16조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의 결정 8. 총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총회는 회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총회) ① 자조금단체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조금단체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3. 거출금의 산정기준, 금액 및 납부면제의 기준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 7. 제28조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의 결정 8. 총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총회는 회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총회) ① 자조금단체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조금단체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3. 거출금의 산정기준, 금액 및 납부면제의 기준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 7. 제16조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의 결정 8. 총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총회는 회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과 제정안의 차이 >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9조(총회의 설치 등) ① 의무자조금단체에 총회를 둔다.		제11조(총회) ① 자조금단체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자조금단체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구성하며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③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삭 제>		-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총회의 설치 내용은 자조금단체 정관에서 위임하고 해당 내용은 삭제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 2. 의장, 부의장 및 감사 후보자의 자격·등록·선거에 관한 사항 3.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10조(총회의 운영)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2. 재적 농수산업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삭 제>		-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총회의 운영 내용은 자조금단체 정관에서 위임하고 해당 내용은 삭제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3.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4. 제15조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총회는 재적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제21조제4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과 금액 및 한도 3. 의무자조금의 사업계획·자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감사 6. 제9조에 따른 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	<신 설> <삭 제>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조금단체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3. 거출금의 산정기준, 금액 및 납부면제의 기준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 7. 제16조에 따른 생산·유	-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내용을 제11조2항1호~9호까지 열거함 -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에 총회의 의결 내용 중 정관의 변경 내용 신설 - 명칭변경(의무거출금→거출금) 반영 - 제정안 제15조제3항에서 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변경하여 삭제 - 생산·유통자율조절의 조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7.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 8.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9. 제15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10.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납부면제의 기준 11. 총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12. 그 밖에 의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제6호로 통합></u> <u><제6호로 통합></u> <u><제6호로 통합></u> <u><삭 제></u>	통자율조절의 결정 8. 총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치 유형 및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제정안에 설정 - 제정안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규정 삭제 - 제정안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규정 삭제 - 제정안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규정 삭제 - 제정안 제29조1항 내용에서 열거
	<u><신 설></u>	③ 총회는 회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의 의결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조문 신설
	<u><신 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위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총회는 본래 「민법」상 사단법인의 의사결정기관³⁵⁾인데,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의무자조금단체에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구성된 총회를 두도록 규정함.³⁶⁾

35) 「민법」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36)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총회의 설치 등) ① 의무자조금단체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구성하며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또한, 재적 농수산업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는 총회에서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과 금액 및 한도, 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 등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³⁷⁾

제정안은 현행 「농수산자조금법」과 비교하여, ①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신 정관으로 위임하고, ② 총회의 의결사항을 일부 조정하며, ③ 총회의 의결방법을 규정함.

①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정관 위임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총회의 구성 중 ‘총회의 전체 구성(회원)’과 총회의 운영 중 ‘의결정족수’ 및 ‘의결사항’ 외의 사항을 정관으로 위임함.

이는 현행법이 법률 또는 부령을 통하여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

37)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총회의 운영) ② 총회는 재적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제21조제4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과 금액 및 한도
3. 의무자조금의 사업계획·자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감사
6. 제9조에 따른 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
7.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
8.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9. 제15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10.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납부면제의 기준
11. 총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12. 그 밖에 의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현행법과 제정안의 총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비교 >

구분	세부구분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제정안
총회 구성	전체 구성원		농수산업자	회원
	임원	종류	의장, 부의장, 감사	정관으로 정함
		선출	부령으로 정함	
		권한		
		직무		
		임기		
총회 운영	소집절차		정기(매년 1회) 임시(재적 4분의 1 이상 요구 등)	정관으로 정함
	의결사항		의무자조금 설치 및 폐지 등 법 제11조 각 호의 사항	정관의 변경 등 안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일반 의결정족수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가중 의결정족수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의결 [※ 제정안 제18조제3항 - 자조금단체 해산(박덕흠의원안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령으로 정함	정관으로 정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5. 2. 13.

제정안은 총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위임함에 따라, 각 자조금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자조금단체가 특수법인으로서 수급조절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점, 안 제25조에 따라 출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율성 부여 강화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② 총회의 의결사항 조정과 관련하여, 제정안에 따른 제도변화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 외에 제정안이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신설하는 사항은 정관 변경 및 생산·유통 자율조절 결정의 두 가지 사항임.

정관 변경과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른 수급관리가 자조금단체의 회원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③ 총회의 의결방법은 「민법」 제75조제1항³⁸⁾의 결의방법에 준하여 규정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한편, 제정안은 안 제15조제1항에서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따라서 안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총회 의결사항에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8)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2) 안 제12조: 대의원회

제정안은 회원 수가 일정 인원을 초과하는 자조금단체에 대하여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12조(대의원회) ① 회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자조금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 등록 및 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대의원회) 회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자조금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 등록 및 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대의원회) ① 회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자조금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 등록 및 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과 제정안의 차이 >

「농수산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12조(대의원회) ① 농수산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의무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선거 및 대의원의 선		제12조(대의원회) ① 회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자조금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 등록 및 선거 등에 필요한 사	- 회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자조금단체의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위임 -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 내용을 추가 - 농수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 등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록 및 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위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제정안은 농산물자조금에 관한 사항을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 제12조의 대의원회 규정에서 ① 제정안에 따른 제도 변화사항을 반영하고, ②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보궐선거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³⁹⁾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또한, ③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 등록 및 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정관으로 위임하여 안 제12조에 반영함.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위임함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어 보임.

다만 기존 위임사항 중 보궐선거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한편, 제정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김선교의원안은 이만희·박덕흠의원안과 달리 대의원의 임기

39)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의원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 ② 의무자조금단체는 제4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중 결원(缺員)이 된 대의원의 수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체 대의원 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음.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서도 법률에서 대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므로, 이만희·박덕흠의원안과 같이 임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자조금단체 회원 수 기준에 대하여 김선교의원안은 100명으로, 이만희·박덕흠의원안은 150명으로 규정함.

현재 18개 농산물 의무자조금단체의 회원 수는 모두 150명 이상이고,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라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현행 기준도 150명이므로, 15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농산물자조금단체 중 의무자조금단체의 회원 현황 >

(단위: 명)

연번	농산물	농업인수 (회원수)	연번	농산물	농업인수 (회원수)	연번	농산물	농업인수 (회원수)
1	인삼	18,240	7	사과	50,045	13	마늘	52,272
2	친환경	45,227	8	감귤	18,145	14	양파	27,867
3	백합	222	9	콩나물	950	15	뽕은감	48,318
4	키위	3,075	10	참외	6,856	16	복숭아	43,286
5	배	17,054	11	절화	1,846	17	차	2,238
6	파프리카	620	12	포도	33,612	18	자생란	309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28.

셋째, 제정안은 안 제12조제4항의 위임규정과 관련하여,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던 대의원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음.

대의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한다면 선출에 관한 사항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안 제13조 신설: 임원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임원 종류를 규정하고,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13조(임원) ① 자조금단체의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수, 임기, 권한 및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5조(임원) ① 자조금단체의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수, 임기, 권한 및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 ① 자조금단체의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수, 임기, 권한 및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특수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유사 입법례의 경우, 대체로 임원의 종류로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규정하므로, 임원의 종류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임.

한편, 제정안은 임원의 수를 정관으로 위임하는데, 유사 입법례의 경우 ① 임원의 수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경우, ② 임원 수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시하고, 구체적인 수는 정관으로 위임하는 경우, ③ 임원의 수를 정관으로 위임하는 경우의 세 종류로 구분됨.

< 특수법인 임원 관련 유사입법례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임원 등) ① 고엽제전우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5명 이내
4. 감사 2명

□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지역농협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⑥ 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⑦ 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3.

제정안에 따른 자조금단체는 품목별로 자조금 및 회원의 규모 등이 상이할 것이므로, 임원의 수나 그 범위를 법률에서 명시하기보다는 자조금단체가 사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안 제14조: 이사회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자조금 운용을 기존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이사회가 맡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14조(이사회) ① 자조금단체의 사업 수행과 자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구성, 이사의 자격,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이사회) ① 자조금단체의 사업 수행과 자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구성, 이사의 자격,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이사회) ① 자조금단체의 사업 수행과 자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등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구성, 이사의 자격,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제정안의 차이>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13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설치)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신 설>	제14조(이사회) ① 자조금단체의 사업 수행과 자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	- 이사회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기능을 수행 - 자조금단체 이사회 구성원 명문화(회장, 부회장, 이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등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사) 위해 해당 조문 신설
	<신 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감사의 역할 명문화를 위해 해당 조문 신설
	<신 설>	④ 이사회의 구성, 이사의 자격,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그 외 이사회 관련 세부사항은 자조금단체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 해당 조문 신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제13조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사무국을 둘 수 있음.⁴⁰⁾

40)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무거출금 거출시점 및 납부일자의 결정
2. 의무거출금의 수납
3. 의무자조금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 보고
4. 의무자조금의 운용, 관리 및 집행
5.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의 지정
6. 의무거출금의 수납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7.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8.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제18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한편,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업무집행기관) 「민법」상의 기관으로, 법인의 유형에 상관없이 법인에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고,⁴¹⁾ 법인에 따라 정관을 통하여 이사들로 구성된 의결기관인 이사회를 둘 수 있음.

<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회 >

"이사회"는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하기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입니다. 이사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인의 필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 이사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자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⁴²⁾, 2025. 1. 8. 확인

그런데 법인의 사무를 「민법」 제58조에 따르면 이사가 집행하는데,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자조금단체의 이사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그 대신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임.

41) 「민법」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2)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ccfNo=4&cciNo=1&cnpClsNo=2&search_put=%EC%9D%B4%EC%82%AC%ED%9A%8C

따라서 자조금단체는 「민법」상 단체의 운영관리의 책임을 이사(또는 이사회)가 담당하여야 하나, 「농수산자조금법」상 사업 활동의 모든 권한이 법인격이 없는 관리위원회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률적 지위와 권한이 모호함.

이로 인하여 현행법 규정만으로는 이사(또는 이사회)와 관리위원회 간 기능이 중복되고, 그 책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명확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 현행법상 농산자조금 운영주체 관련 >

- (운영주체) 자조금단체와 관리위원회간 위상정립 관련 혼선 존재
 * '자조금 단체'인 비영리법인이 법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조금관리위원회(법인격 없음)는 자조금 실무업무를 총괄하는 구조

< 현행법상 농산자조금 운영주체 구성과정 및 현황 >

구성 준비	■ 관련 협회들이 협력 및 논의를 거쳐 대표성 있는 '자조금 단체'를 정하여 (신규법인 설립 또는 기존 단체가 주도) 품목자조금 구성을 준비
구성 후	<pre> graph TD A["의무자조금단체 (비영리 사단법인)"] --> B["이사회(필요시) * 협회 행정사항 등을 일부 수행"] A --> C["총회 또는 대의원회 (최고 의결기관)"] C --> D["자조금관리위원회"] D --> E["사무국"] </pre> ■ 협회장이 자조금단체장 역할을 수행하며, 대의원회 의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다수 (관리위원회는 자조금운영 실무총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28.

이에 제정안은 이사(또는 이사회)와 관리위원회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률에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현행법상의 관리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으려는 것임.

< 이사회와 관리위원회 비교 >

구분	이사회	관리위원회
현행법	- 「민법」상 법인의 의결기관 * 필수기관은 아님 - 구성: 「민법」에 따른 이사로 구성 * 이사: 대표기관, 업무집행기관	-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른 자조금 운용 업무 수행 기관 -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 21명 이하 위원
⇓	⇓	⇓
제정안	- 제정안에 따른 자조금 운용에 관한 의결기관 - 구성: 회장, 부회장 및 이사 * 감사가 출석하여 발언 가능	- 삭제

자료: 제정안(2205471, 2205614, 2205702)을 바탕으로 작성, 2025. 2. 13.

제정안의 취지는 자조금단체의 집행기관을 이사회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자조금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각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이사회의 구성을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규정함. 이 중 박덕흠의원안은 단체의 공공성·투명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함.

이는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이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⁴³⁾

자조금단체의 이사회에 공무원이 포함되는 경우 단체의 공공성·투명성 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43)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사람으로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5) 안 제15조: 자조금 운용과 관리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매년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15조(자조금 운용과 관리) ① 자조금단체는 매년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지출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조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지출금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	제27조(자조금 운용과 관리) ① 자조금단체는 매년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지출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조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지출금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	제15조(자조금 운용과 관리) ① 자조금단체는 매년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지출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조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지출금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다. ⑤ 자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⑤ 자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⑤ 자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제정안의 차이 >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제15조(자조금 운용과 관리) ① 자조금단체는 매년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지출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자금운용계획안 작성에 관한 역할을 자조금단체가 수행하고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삭제 - 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지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관리 강화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34조로 이동>		- 제정안 제34조에서 자조금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 열거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조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지출금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변경안을 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변경 - 농식품부 고시에 적시되어 있는 사항(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하 변경 시 의결 유무) 구체화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을 삭제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변	<제정안 제15조 제3항 단서로>		-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총회(대의원회)의결을 거치지 않는 조문 삭제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u>이동></u>		-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삭제
⑥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u><제정안 제35조로 이동></u>		- 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공시 의무를 제35조에서 규정 -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삭제
⑦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자금운용계획 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자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무자조금 운용을 자조금 운용으로 일부 수정하여 단순 명료하게 표현하고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삭제 - 자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단순 명료하게 표현하고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삭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제17조는 의무자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특히 자조금운용계획 승인제도를 규정하여 자조금단체의 수입 및 지출 측면을 규제함.

제정안은 ① 자조금 회계처리 및 공시의무 등 일부 내용을 다른 조항에서 규정함에 따라 삭제하고, ② 자조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 구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함.

또한, ③ 지출금액 변경과 관련하여 의결 절차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변경함.

현행법과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자조금운용계획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 중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의 구분을 고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지출금액 변경을 의결 절차 없이 승인받는 경우에 대하여,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하인 경우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한편, 주요항목이 아닌 항목의 지출금액 변경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농산물분야 농수산물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8조에서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되, 해당연도 자조금 사용액의 5% 이하인 경우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출금액 변경시 의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연번	구분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제정안
1	대상항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항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
2	생략기준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하	- 총사업비 지출금액의 5% 이하
3	생략 의결절차	- 총회의 의결	- 이사회의 의결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및 제정안(2205471, 2205614, 2205702)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4.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의 지출금액 변경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되, 총사업비 지출금액의 5% 이하인 경우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검토할 수 있음.

첫째, 의결항목과 관련하여, 안 제17조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자조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이 안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인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생략기준 및 의결절차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규제 완화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보임.

① 생략기준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기준으로 하나, 제정안은 총사업비 지출금액의 5% 이하로 개정함.

총사업비 지출금액은 주요항목 지출금액과 그 외 항목 지출금액으로 구분될 것이므로, 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 금액의 수준 자체는 총사업비 지출금액 규모에 따라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어 보임.

다만, 현재 주요항목이 아닌 항목에 대하여 해당연도 자조금 사용액 5%를 의결 생략 기준으로 함을 고려하면, 제정안은 보다 규제 완화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② 의결절차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현행법과 달리 총회가 아닌 이사회
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는데,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임
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규모를 고려하면, 제정안은 현행보다 완화
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자조금단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자조금
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조금단체가 처음으로 법정화된
다는 점에서 종전과 달리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제정안은 조 제목을 ‘자조금 운용과 관리’로 규정하는데, 현행
법상 관리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공시 등의 내용이 다른 조항으로 이
동하고, 대부분 자조금운용계획 승인제도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조 제목을 “자조금운용계획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6) 안 제16조: 생산·유통 자율조절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16조(생산·유통 자율조절) ①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이하 “생산·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경작 및 출하 신고 2.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 규격 설정 3. 수출 등 유통조직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생산·유통 자율조절) ①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이하 “생산·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경작 및 출하 신고 2.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 규격 설정 3. 수출 등 유통조직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생산·유통 자율조절) ①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이하 “생산·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경작 및 출하 신고 2.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 규격 설정 3. 수출 등 유통조직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 관련 조문(박덕흠의원안 기준으로, 세 건의 제정안은 조 번호를 제외한 사항이 동일함) 제4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유통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제정안의 차이 >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21조의2(생산·유통 자율조절)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생산·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경작 및 출하 신고 2.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3.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사항 ②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6조(생산·유통 자율조절) ①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이하 “생산·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경작 및 출하 신고 2.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3. 수출 등 유통조직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자조금단체로 변경하고 농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삭제 -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이 아닌 유통조직으로 수정 - 농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삭제 -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를 회원으로 변경하고 단서 조항 삭제 - 농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삭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제21조의2에서는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자조금단체의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대하여 규정함.

세 건의 제정안은 동일하게 ①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에서 ‘단일’을 삭제하고, ② 관리위원회⁴⁴⁾의 승인을 받아 생산·유통 자율조

44) 제정안은 관리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이사회가 수행하도록 함

절에 따르지 않는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안 제16조에 반영함.

첫째, 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생산·유통 자율조절 중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과 관련하여, 유통조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 유지하되 ‘단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수출 등에 대한 단일 유통조직 지정은 지정한 해당 유통조직을 통하여만 수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조금단체의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의하여 수출 등의 단일 유통조직을 지정한 사례가 없음.

농산물의 생산자가 아닌 수출업체를 중심으로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단일 조직이 형성되어 있지만, 이들 역시 생산·유통을 조절하기보다는 공동 브랜드를 설립하고 마케팅을 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음.

< 자조금단체가 아닌 수출업체 중심의 통합조직 현황 >

연번	품목	조직명	공동브랜드
1	파프리카	코파(주)	
2	딸기	(주)케이베리	
3	포도	한국포도수출연합(주)	
4	절화류	(주)케이플로라	
5	배	한국배수출연합(주)	
6	토마토	한국토마토수출(주)	

연번	품목	조직명	공동브랜드
7	감귤	한국감귤수출연합(주)	
8	키위	(농)한국키위수출(주)	
9	단감	(농)한국단감수출(주)	
10	배추류	(농)케이케비지(주)	
11	무	(농)한국무수출(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5. 2. 6.

해외 사례로서는 뉴질랜드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뉴질랜드는 키위 수출규정(Kiwifruit Export Regulation)을 통하여 ‘제스프리(Zespri)’를 준단일 수출 창구로 인정하여 인접국인 호주를 제외한 수출에 대해서 단일 유통조직으로 규정함.

이에 제스프리는 단일 유통조직을 통한 창구단일화를 통하여 뉴질랜드 키위의 수출 대상 및 물량 조정, 수출 농산물의 품질 기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함.⁴⁵⁾

자조금단체의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라 제스프리과 같은 단일 유통조직이 형성될 수 있다면 수급안정에 도움이 될 것임.

다만, 단일 유통조직은 해당 품목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지니므로 회원 다수의 합의가 요구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자조금단체도 단일 유통조직을 지정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

45) 국승용, 「뉴질랜드 원예산업 구조 - 키위·사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pp. 33~41.

처음부터 자조금단체에게 ‘단일’ 유통조직을 지정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우선 유통조직 지정 권한만을 주어 생산·유통 자율조절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이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예외사항인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를 삭제함.⁴⁶⁾

예외사항을 삭제함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수행하는 경우 모든 회원들이 이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안 제45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따라서, 생산·유통 자율조절 제도의 목적인 농산물의 수급안정의 달성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현행법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자조금단체의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르지 않은 사례는 없음.

한편, 안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생산·유통 자율조절 수행 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규정하는데, 안 제12조에 따른 대의위원회는 총회를 갈음하려는 경우에 두는 기구로서 필수 설치기구가 아님.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총회에서 찬성 절차를 거치되 대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대의원의 찬성을 받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46) 참고로 제정안은 ‘관리위원회’를 삭제하고, 그 기능을 ‘이사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므로, 만약 제정안이 예외사항을 유지하였다면, ‘이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가 되었을 것임

(7) 안 제17조 신설: 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제정안은 자조금단체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를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17조(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설립 인가의 취소	제29조(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설립 인가의 취소	제17조(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설립 인가의 취소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해산 사유가 적용됨.

그러나 제정안은 자조금단체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해산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수법인에 관한 유사 입법례에서는 제정안과 유사한 해산 사유를 규정하므로, 제정안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특수법인 해산 사유 관련 유사입법례 >

☐ 농업협동조합법

제82조(해산 사유)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분할
4. 설립인가의 취소

☐ 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산명령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4.

다만, 제정안은 안 제29조제4호의 해산 사유를 ‘설립 인가’의 취소로 규정하는데, 안 제6조의 조 제목에서는 띄어쓰기 없이 ‘설립인가’로 규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설립인가’로 수정이 필요함.

(8) 안 제18조: 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제정안은 자조금단체를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18조(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① 회원은 제17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한다.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0조(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① 회원은 제29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한다.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① 회원은 제17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한다.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공표하여야 한다.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과 제정안의 차이 >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①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재적 농수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폐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① 회원은 제17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한다.	- 자조금단체 해산 요청을 위한 근거 사항 제18조에서 열거하고 의무자조금 폐지를 자조금단체 해산으로 변경 - 요청사유 변경 : 설치 목적 달성 곤란 → 해산 사유의 발생 - 의장을 회장으로 변경하고 자조금단체 해산 요청 시 행정절차 기한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변경 - 의무자조금 폐지 관련 조문을 자조금단체 해산 관련으로 변경 - 의장을 회장으로 변경 - 자조금단체 해산을 위한 정족수 변경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적 농수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삭 제>		- 자조금단체 해산을 위한 정족수 변경(안 제3항)에 따라 삭제
⑤ 의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폐지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 또는 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공표하여야 한다.	- 의장을 회장으로 변경 -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삭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제21조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회의 결의를 통한 자조금의 폐지 절차를 규정함.

제정안은 자조금단체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자조금 설치 ‘승인’ 대신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함.

이에 현행법 제21조를 총회의 결의를 통한 자조금단체의 해산 절차로 수정하여 안 제18조로 반영하려는 것임.

다만, 현행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것은 법인인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아닌, 법인격이 없는 의무자조금의 폐지임. 현행법상 규정을 수정하여 제정안에 따른 특수법인인 자조금단체의 해산에 관하여 반영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18조제1항은 회원이 해산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안 제17조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는데, 이를 통한 특수법인의 해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17조에 따른 해산사유는 ①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② 총회의 의결, ③ 합병 또는 분할, ④ 설립인가의 취소로, 이들 해산사유가 있게 되면 법인은 당연해산하게 됨.

그 결과 안 제18조제1항에 따라 회원이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요청하지 않아도, 자조금단체는 제17조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산한 법인이 될 것임.

가령, 자조금단체 설립인가 취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조금단체는 안 제17조제4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하는 것이므로, 회원의 해산 요청 사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임.

이 경우 해산 요청 사유를 안 제17조에 따른 해산사유로 규정한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에 관하여는 안 제18조의 절차와 가중 의결정족수에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안 제18조는 회원의 해산 요청 사유를 제한하고 그 사유에 따라 총회에서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의결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산을 의결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규정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임.

예컨대, 안 제18조제1항의 내용에 ‘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은 회원의 해산 요청에 의하여야만 하고, 해산 요청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와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제정안처럼 회원의 해산 요청 사유를 특정한 사유로 한정한다면, 그 외의 사유로 총회에서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의결하려는 경우⁴⁷⁾에 안 제18조의 ‘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 해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47) 참고로 법문언상 안 제18조는 특정한 사유로 회원이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일 뿐,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는 경우를 특정한 사유로 한정한다는 규정이 아님

이 경우 특히 안 제18조제3항 후단의 가중 의결정족수는 특정한 사유에 따른 해산결의에만 적용하는 것이 됨. 이에 따라 그 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가중 의결정족수가 아닌 안 제11조제3항에 따른 일반 의결정족수(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가 적용될 것임.

둘째, 제정안은 회원의 자조금단체 해산 요청이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위하여 찬반투표를 하도록 규정하는데, 유사 입법례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규정함.

< 특수법인의 총회 결의 관련 유사입법례 >

□ 농업협동조합법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해산,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이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6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①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선임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4.

따라서, 해당 찬반투표는 총회의 의결을 위한 찬반투표로 규정하기 보다는, 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찬반투표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할 뿐임.

셋째, 특수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유사 입법례는 총회의 해산결의에 관하여 규정하나,⁴⁸⁾ 제정안과 같이 총회의 해산결의에 대하여 별도의 사유나 절차를 규정하지 않음.

< 특수법인 해산 관련 유사입법례 >

□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6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3. 조합의 해산

⑤ 총회의 의사(議事)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합의 해산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4.

다만, 제정안은 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위임함에 따라 총회의 소집절차를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데, 안 제18조를 수용하지 않고 소집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 총회의 해산결의에 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48) 이는 사단법인이 「민법」 제77조제2항과 제78조에 따라 총회의 해산결의를 통하여도 해산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임

참고로 「민법」에서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일정 인원 이상 구성원의 소집 요구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특수법인에 대한 유사 입법례에서도 총회 소집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총회 소집 관련 「민법」 및 유사입법례 >

□ 민법

제70조(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36조(총회의 소집청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이나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서면에 적어 조합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장이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감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4.

(9) 안 제19조 신설: 청산 등

제정안은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닌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 시 청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신설).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19조(청산 등) ① 자조금단체가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총회의 회장이 청산인(清算人)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開議)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④ 해산한 자조금단체의 청산 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31조(청산 등) ① 자조금단체가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총회의 회장이 청산인(清算人)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開議)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④ 해산한 자조금단체의 청산 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9조(청산 등) ① 자조금단체가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총회의 회장이 청산인(清算人)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開議)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④ 해산한 자조금단체의 청산 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인의 청산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⁴⁹⁾ 법률에서 청산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거나 준용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49) 참고로 제정안은 안 제20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민법」상 규정을 준용하는데, 관련 사항은 후술함

세 건의 제정안은 동일한 내용으로서 별도의 청산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인 「농업협동조합법」 등과 비교하면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9조제1항에서 총회에서 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수법인의 청산 관련 유사입법례 >

□ 농업협동조합법

제84조(청산인) ① 지역농협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조합장이 청산인(清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협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제85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開議)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86조(청산 잔여재산) 해산한 지역농협의 청산 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산림조합법

제69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③ 시·도지사는 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제70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승인을 받기 위하여 두 차례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열리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1조(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4.

(10) 안 제20조 신설: 준용규정

박덕흠의원안은 자조금단체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을 「민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의 특정 조항을 준용하여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신설).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20조(준용규정) 자조금단체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정안의 자조금단체는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이므로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민법」에 따른 법인과 동일한 절차를 정할 사항이 존재할 수 있음.

특히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항이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3개조 뿐이고, 그 내용도 해산사유, 총회 결의에 따른 해산, 청산 절차 뿐임.

따라서, 관련 절차의 누락을 막기 위하여 준용규정을 두려는 박덕흠의원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임.

＜ 제정안의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 ＞

연번	대상 조항
1	제17조(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설립 인가의 취소
2	제18조(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① 회원은 제17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한다.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공표하여야 한다.
3	제19조(청산 등) ① 자조금단체가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총회의 회장이 청산인(清算人)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開議)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④ 해산한 자조금단체의 청산 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자료: 제정안(2205471, 2205614, 2205702)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5.

다만, 박덕흠의원안은 앞서 살펴본 안 제4조제2항에서 “자조금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

자조금단체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도 자조금단체에 관한 사항이므로 안 제4조제2항에 따라 「민법」의 규정이 준용될 것인바, 중복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박덕흠의원안 제20조를 삭제하거나, 안 제4조(법인격)에서 규정하는 「민법」에 대한 일반적 준용을 안 제20조(준용규정)로 이동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 경우 박덕흠의원안 제20조에서 준용하는 규정 중 「민법」이 아닌 규정으로는 유일하게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의 청산인 결격사유 규정이 있음. 만약 이를 준용하고자 한다면 준용규정에 항을 신설하여 별도로 규정할 수 있어 보임.

< 박덕흠의원안 제20조에 따른 준용대상 조항 >

법률	연번	대상 조항
민법	1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3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4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법률	연번	대상 조항
민법	5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7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8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9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10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비송 사건 절차법	1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및 제정안(2205471, 2205614, 2205702)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4.

참고로, 유사 입법례 중 「민법」 중 특정 조항을 지정하여 준용하는 법률로 「농업협동조합법」의 지역농협에 대한 준용규정이 있음.

「농업협동조합법」은 제정안과 달리 일반적 준용규정을 두지 않고, 관련 사항마다 별도로 준용규정을 둔다는 차이가 있음.

< 준용규정 관련 유사입법례: 농업협동조합법 >

제55조(「민법」·「상법」의 준용)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 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제89조(「민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102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4.

(11) 안 제21조: 개선 등 조치명령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단체에 대하여 개선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치명령 기간 내에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20조(개선 등 조치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조금단체가 설립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자조금단체의 거출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출연 또는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해당 자조금이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자조금단체	제32조(개선 등 조치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조금단체가 설립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자조금단체의 거출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출연 또는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해당 자조금이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자조금단체	제21조(개선 등 조치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조금단체가 설립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자조금단체의 거출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출연 또는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해당 자조금이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자조금단체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제정안의 차이>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의무자조금단체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 생산액 등이 전국 생산량, 생산액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이거나 의무자조금단체가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자조금설치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의무자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u><제21조 제6항에서 분리></u>	제21조(개선 등 조치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자조금단체 운영 개선 가이드라인 및 미이행시 제재를 위한 조문 변경 - 현행법 제21조제6항에서 본문의 내용을 분리하여 규정
	<u><신 설></u>	1. 자조금단체가 설립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자조금단체 운영 개선 가이드라인 및 미이행시 제재를 위한 조문 신설
	<u><신 설></u>	2. 자조금단체의 거출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 자조금단체 운영 개선 가이드라인 및 미이행시 제재를 위한 조문 신설
	<u><신 설></u>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출연 또는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자조금단체 운영 개선 가이드라인 및 미이행시 제재를 위한 조문 신설
	<u><제21조 제6항에서></u>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 자조금단체 운영 개선 가이드라인 및 미이행시 제재를 위한 조문 신설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u>분리></u>	경우 등 해당 자조금이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현행법 제21조제6항에서 단서의 내용을 분리하여 신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제21조제6항은 의무자조금단체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의무자조금 폐지명령을 규정함.

제정안은 농산물자조금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면서 ① 조치명령을 한 경우 해당 자조금단체에 출연 또는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② 자조금단체의 거출률이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를 조치명령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① 지방자치단체로의 통보와 관련하여,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출연 및 지원의 주체를 정부로 규정하나,⁵⁰⁾ 제정안은 출연 및 지원의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의 통보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② 조치명령 사유와 관련하여, 자조금단체가 회원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거출금을 통하여 운영되는 단체임을 고려하면, 거출률이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감독이 필요할 것임. 따라서 이를 조치명령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50)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출연 및 지원)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정안은 거출률을 정의하고 있지 않은 점, 거출률 미달이 최종적으로는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출률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제정안은 비율을 뜻하는 한자 ‘률(率)’에 대하여 거출‘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고시인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한자음 ‘률’은 ①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률’로 적되, ②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경우 ‘율’로 적어야 함.

< ‘률(率)’에 관한 한글 맞춤법 >

□ 「한글 맞춤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2호)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다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비율(比率)	비률
백분율(百分率)	백분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바탕으로 작성, 2025. 2. 14.

따라서 ‘ㄴ’ 받침 뒤에서는 ‘율’이 아닌 ‘률’로 적는 것이 맞춤법에 맞으므로, 거출‘율’을 거출‘률’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12) 안 제22조: 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따른 수납중지 등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거출금 수납을 중지하고,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잔액을 반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21조(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따른 수납중지 등) ① 회장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의결된 경우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회원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자조금단체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거출금 수납을 중지시켜야 한다.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의결되기 전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이미 납부된 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결정된 때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 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3조(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따른 수납중지 등) ① 회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의결된 경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회원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자조금단체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거출금 수납을 중지시켜야 한다. ②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의결되기 전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이미 납부된 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결정된 때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 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따른 수납중지 등) ① 회장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의결된 경우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회원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자조금단체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거출금 수납을 중지시켜야 한다.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의결되기 전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이미 납부된 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제18조제3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결정된 때에는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제정안의 차이 >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⑦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된 경우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폐지를 명한 경우에는 즉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기 전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하기 전에 납부된 의무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의무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따른 수납중지 등) ① 회장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의결된 경우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회원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자조금단체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거출금 수납을 중지시켜야 한다.	- 의무자조금 폐지 관련 조문을 자조금단체 해산 관련으로 신설하여 제22조에서 열거 - 현행법 제21조제7항 전단의 내용만을 안 제22조제1항으로 반영
	<신 설>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의결되기 전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이미 납부된 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 현행법 제21조제7항 후단의 내용을 안 제22조제2항으로 분리
⑧ 의무자조금이 폐지될 경우 의무자조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 등 의무자조금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제18조제3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결정된 때에는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 의무자조금 폐지 관련 조문을 자조금단체 해산 관련으로 신설하여 제22조에서 열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제21조제7항 및 제8항은 의무자조금이 폐지되는 경우, 거출금 납부를 중지하고, 정부의 출연금 및 지원금의 잔액을 반납하도록 규정함.

제정안은 제도 변화 사항에 따라 현행법의 내용을 수정하여 안 제22조로 반영하려는 것임.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①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산이 의결되거나, ②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거출금 수납을 중지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들 사유는 모두 안 제17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조금단체의 해산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거출금 납부를 중지하고,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가 지연된 거출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따라서 안 제22조에서 서술하고 있지 않은 안 제17조제1호(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또는 같은 조 제3호(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를 포괄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17조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정안은 정부의 출연금 및 지원금의 잔액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출연 및 지원의 주체를 정부

로 규정하고 있으나,⁵¹⁾ 제정안은 출연 및 지원의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함.

따라서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잔액을 반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51)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출연 및 지원)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안 제23조 신설: 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

이만회의원안과 박덕흠의원안은 자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하여 자조금단체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신설).

김선교의원안	이만회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34조(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 ① 자조금단체는 자조금단체 간 협력사업, 정보 교류 등을 통한 자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하여 자조금단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3조(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 ① 자조금단체는 자조금단체 간 협력사업, 정보 교류 등을 통한 자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하여 자조금단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정안은 품목별로 자조금단체가 각각 운영됨에 따라 각 단체마다 사업의 운영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응 능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조금단체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유사 입법례에서는 각각의 단체들이 연합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례가 많음.

이는 크게 연합회에 ①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경우와, ②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됨.

< 연합회 관련 유사입법례 >

□ 법인격을 부여하는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으로 한다.

□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5.

유사 입법례 중 ① 연합회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함.

② 연합회에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로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연합회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립의 근거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임.

다만, 안 제23조제1항은 설립의 근거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사무국 설치의 근거이므로,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안 제23조제2항은 사무국 설치의 근거 규정인데, 유사 입법례 중에서는 법률에서 연합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연합회의 사무국 설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무국 설치가 현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사무국 관련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마.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

제정안은 ‘1 품목 1 자조금단체’의 원칙에 따라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상의 의무자조금 형태의 자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22조(자조금의 조성) ①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출연 또는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제4조(자조금의 조성) ①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출연 또는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제24조(자조금의 조성) ①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출연 또는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조금의 재원)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거출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제25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2. 제16조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3.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4. 회원, 소비자, 제27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6.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동향,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7. 거출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자조금의 재원)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거출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제7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2. 제28조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3.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4. 회원, 소비자,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6.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동향,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7. 거출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자조금의 재원)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거출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제27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2. 제16조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3.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4. 회원, 소비자, 제29조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31조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6.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동향,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7. 거출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8. 그 밖에 자조금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거출금의 산정기준) 자조금단체는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판매액 등 회원별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거출금의 규모를 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거출금의 납부) ①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 내에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자조금단체 회원이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납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거출금을 직접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자조금단체는 회원에게 거출금 납부안내서를 직접 발송하거나 공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거출금 납부에 관	8. 그 밖에 자조금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거출금의 산정기준) 자조금단체는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판매액 등 회원별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거출금의 규모를 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거출금의 납부) ①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 내에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자조금단체 회원이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납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거출금을 직접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자조금단체는 회원에게 거출금 납부안내서를 직접 발송하거나 공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거출금 납부에 관	8. 그 밖에 자조금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8조(거출금의 산정기준) 자조금단체는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판매액 등 회원별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거출금의 규모를 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거출금의 납부) ①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 내에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자조금단체 회원이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납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거출금을 직접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자조금단체는 회원에게 거출금 납부안내서를 직접 발송하거나 공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거출금 납부에 관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지원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거출금의 수납위탁) ①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등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 또는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④ 회원 또는 대납기관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거출금은 자조금단체가 직접 징수할 수 있다.	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거출금의 수납위탁) ①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등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 또는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④ 회원 또는 대납기관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거출금은 자조금단체가 직접 징수할 수 있다.	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0조(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거출금의 수납위탁) ①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등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 또는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④ 회원 또는 대납기관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거출금은 자조금단체가 직접 징수할 수 있다.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⑤ 수납기관은 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 및 자조금의 운용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제20조에 따른 개선등 조치명령, 제22조에 따른 자조금의 통합 및 분리, 제23조에 따른 자조금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지원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31조(과오납금의 환급)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착오 등으로 납부한 거출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⑤ 수납기관은 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 및 자조금의 운용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제32조에 따른 개선 등 조치명령, 제4조에 따른 자조금의 통합 및 분리, 제5조에 따른 자조금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지원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과오납금의 환급)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착오 등으로 납부한 거출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⑤ 수납기관은 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 및 자조금의 운용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제21조에 따른 개선 등 조치명령, 제24조에 따른 자조금의 통합 및 분리, 제25조에 따른 자조금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지원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과오납금의 환급)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착오 등으로 납부한 거출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하며, 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회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32조(자조금회계의 구분)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공시)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하며, 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회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14조(자조금회계의 구분)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시)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하며, 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회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34조(자조금회계의 구분)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공시)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자발성 및 임의성이 전제된 임의자조금 개념을 삭제하고, 가입이 강제되고 거출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자조금으로 자조금 개념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또한, 자조금단체 별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에 동의함.

2) 검토의견

(1) 안 제24조: 자조금의 조성

제정안은 자조금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1 품목 1 자조금 원칙’을 규정하고, 다만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경우, 제정안이 조성하도록 하는 자조금은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이 규정하는 자조금 형태인 ① 의무자조금과 ② 임의자조금 중 의무자조금에 해당하여, 제정안은 임의자조금 개념을 삭제하고 있음(안 제24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22조(자조금의 조성) ①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에 관하여 필요	제4조(자조금의 조성) ①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에 관하여 필요	제24조(자조금의 조성) ①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에 관하여 필요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제정안의 차이 >

현행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3조(농수산물자조금의 설치) ①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또는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자조금단체로 통합하여야 한다.		제24조(자조금의 조성) ①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으로 임의자조금 관련 내용이 삭제됨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자조금단체를 설립하여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운영·관리하는 원칙은 유지 -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삭제 - 제2항에 따른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위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현재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라 자조금은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나뉘고,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원칙적으로 둘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자조금단체는 설치한 자조금의 종류에 따라 의무자조금단체와 임의자조금단체로 구분됨.⁵²⁾

의무자조금의 경우 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인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임의자조금의 경우 농수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재원으로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음.

<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의 차이 >

구분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
정의	(법 제2조) - (의무농수산물자조금) 의무거출금(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	(법 제2조) - (임의농수산물자조금) 임의거출금(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
설치	(법 제6조) - 농식품부에 설치계획서(설치목적, 재원확보 방안, 회원자격 등) 제출·승인(자조금 단체의 대표성*, 사업역량 등 고려) * 농수산업자, 생산량, 생산액, 재배면적이 전체의 50%초과 → 총회(또는 대의원) 2/3 투표와 2/3 찬성 → 농식품부에 결과 보고 및 10일 이내 공표	(법 제22조) -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설치목적, 임의거출금 부과대상·납부방법, 재원확보방안 등) 작성 → 해당 농수산업자 10/100 이상 서명 → 농식품부에 제출·승인
조직	(법 제9조~제14조, 제18조) - 총회(의장1, 부의장1, 감사 2~5) · 의결사항(자조금 설치·폐지, 거출금 산정 기준·금액·한도, 사업계획·결산 등) - 대의원회(농수산업자 150명 초과시, 20~200명)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11~21명, 거출금 거출시점·수납, 자조금 운용·관리·집행 등), 사무국	(법 제24조~제25조) - 임의자조금위원회(자조금 폐지·금액, 계획 수립·결산 등 심의·의결, 15명이하)

52)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무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임의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이란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4.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이란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5. “의무자조금단체”란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6. “임의자조금단체”란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제3조(농수산물자조금의 설치) ①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또는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다.

구분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
거출 한도	(법 제8조) - 해당 농수산물 평균 거래가격의 1/100 이내(품목특성에 따라 장관 승인하에 산정 기준·거출한도 변경 가능)	- 규정 없음
의무	(법 제21조의2조) - 대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생산· 유통 조치(수급조절 등)	- 규정 없음
폐지	(법 제21조) - 농수산업자 1/10이상 서명 → 폐지요청 → 총회(또는 대의원회) 투표 → 공표 - 농수산업자 1/2이상 요청 → 자동폐기 - 생산량(액) 비중 50%이하 등 → 정부의 개선조치 명령 → 미개선 시 폐지명령	(법 제27조) - 5/100이상 서명 → 폐지요청 → 투표 - 농수산업자 1/2이상 요청 → 자동폐기
벌칙	(법 제34~제37조) - 과태료 부과 * (1천만원 이하) 자조금의 용도 위반, 수납의뢰 거부 및 수납중단, 찬반투표 미실시 폐지, 유사명칭 사용, 자조금 폐지 후 수납지속 등 * (3백만원 이하) 거출금 미납 생산유통지율조절 위반	- 규정 없음
국고 지원	(사업시행지침) - 사업신청액, 전년도 집행실적, 운영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등급별 차등지원 * 매우우수(100% 지원), 우수(90%), 보통(80%)	(사업시행지침) - 의무자조금 추진단체(3년 이내에 의무 자조금 결성 전제)에 1억원 한도내 한시지원 * 임의자조금 졸업제 도입('18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그런데 임의자조금과 관련하여, 거출금 납부에 대한 자발성 내지 임의성에 대한 인식이 농수산업자로 하여금 거출금 미납의 여지를 주어, 무임승차를 유발하고 자조금의 성장 및 발전에 한계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음.

자조금 제도는 농수산업자가 주체가 되어 수급조절·소비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해당 품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특성상 거출금 미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효과를 배제하는 것이 어려움.

이에 따라 농수산업자는 자신의 품목에 대한 자조금에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수급조절·소비홍보 등에 따른 효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거출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유인이 발생함.

농림축산식품부도 임의자조금 제도로는 자조금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자조금 위주의 자조금 제도 운영을 위한 임의자조금 졸업제(2018년)를 시행한 바 있음.

임의자조금 졸업제는 임의자조금 중 기존 자조금은 2017년까지, 신규 자조금은 설치 후 3년 동안만 지원하여, 의무자조금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임.

이에 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1 품목 1 자조금 원칙’을 유지하되, 현행법에 따른 자조금 구분 중 ‘의무자조금’만을 자조금 형태로 인정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농산자조금에 있어 보다 건실한 운영이 가능한 의무자조금 제도만을 인정하여, 자조금제도의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 보임.

다만, 제정안은 안 제24조제3항에서 ‘1 품목 1 자조금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같은 조 제2항의 품목 통합 또는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 이미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중복하여 규정한 측면이 있음.

(2) 안 제25조: 출연 또는 지원

제정안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23조(출연 또는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출연 또는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출연 또는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과 제정안의 차이 >

현행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5조(출연 및 지원)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출연 또는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현행법 제5조에서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정안은 ① 출연 및 지원의 주체를 ‘정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고, ② 출연 및 지원의 대상을 ‘자조금’에서 ‘자조금단체’로 수정하여 안 제25조로 반영하려는 것임.

① 출연 및 지원의 주체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지원주체 중 ‘정부’를 행정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함.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명시하여 포함함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육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② 출연 및 지원의 대상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대상을 ‘자조금’에서 ‘자조금단체’로 수정함.

안 제34조에서 자조금단체에게 자조금에 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함을 고려하면, 제정안의 수용에 따라 ‘자조금’이 아닌 ‘자조금단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조금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운영비 지원의 타당성, 적절성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3) 안 제26조: 자조금의 재원

제정안은 자조금을 조성하는 재원에 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24조(자조금의 재원)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거출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제6조(자조금의 재원)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거출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제26조(자조금의 재원)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거출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제정안의 차이>

현행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무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제26조(자조금의 재원)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거출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 조문 수정 (의무자조금→자조금) - 조문 수정 (의무거출금→거출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 - 농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삭제 - 조문 수정 (의무자조금→자조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제정안은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른 자조금의 재원에서, ① 임의자조금 삭제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② 안 제25조에서 자조금단체에 대한 출연 및 지원의 주체를 ‘정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③ 농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자의 지원금을 새로이 포함함.

제정안에 따르면, 자조금의 재원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농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자의 지원금을 포함함.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행법 및 제정안은 재원으로서 출연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규정함.

지원금의 경우, 현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자조금지원(3031-325)’ 사업을 통하여 의무자조금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농산자조금단체에 대하여는 출연금 교부가 한번도 없었음.

< 2025년도 자조금지원(3031-325) 사업(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년 계획		'25년 계획 (B)	증 감	
		당초(A)	수정		(B-A)	%
자조금지원	13,110	13,110	13,110	13,110	-	-
자조금지원(단체)	12,090	12,090	12,090	12,110	20	0.2
자조금지원(행정경비)	20	20	20	-	△20	△100.0
자조금통합지원센터	1,000	1,000	1,000	1,000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25.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⁵³⁾에서는 국가가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는 어떠한 기관이 출연금과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원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현행법과 제정안은 자조금의 재원으로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조금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자조금지원’ 사업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하나의 자조금단체가 출연금과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임.

따라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수정하여, 해석상의 혼란 여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어 보임. 유사 입법례의 경우에도 특수법인의 재원 조달에 있어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임.

< 특수법인 재원 관련 유사입법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 설립 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 5. (생략)

5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보조금**,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금·수수료,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차입금,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출연금·보조금의 지급·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3.

② 농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자의 경우, 현행법령은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를 ‘종자업자, 유통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제조업자 및 가공업자’로 규정함.⁵⁴⁾

농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자는 농산물의 생산업자, 즉 농업인으로 보이는데, 농업인은 회원으로서 이미 거출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임.

54)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법 제7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의무자조금 품목의 종자업자,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
2. 해당 의무자조금 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자 및 가공업자

(4) 안 제27조: 자조금의 용도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조성 및 운용하는 자조금의 용도를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25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2. 제16조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3.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4. 회원, 소비자, 제27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6.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동향,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7. 거출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자조금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2. 제28조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3.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4. 회원, 소비자,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6.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동향,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7. 거출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자조금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2. 제16조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3.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4. 회원, 소비자, 제29조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31조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6.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동향,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7. 거출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자조금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제정안의 차이 >

현행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4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2. 농수산업자, 소비자, 제19조 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5.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6. 자조금단체 가입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u><제4조 제3호에서 분리></u> <u><신 설></u> <u><삭 제></u>	제27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2. 제16조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3.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4. 회원, 소비자, 제31조에 따른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6.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동향,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7. 거출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자조금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농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자조금의 용도 범위를 규정함 - 종전 제3호의 내용 중 일부를 분리하여 제정안 제1호로 규정 - 조문 수정 (농수산물 → 농산물) -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용도에 신설 - 조문 수정 (농수산물 → 농산물) - 조문 수정 (농수산업자→회원) - 현행법 중 ‘자율적 수급 안정’은 제정안 제1호에서 규정 - 조문 수정(농수산물 → 농산물) - 자조금단체 운용 평가 조문 개정에 따라 용도에서 삭제 - 거출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조문 내용 수정 - 이사회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통합으로 인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위원회 내용 삭제 - 농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임의자조금과 의무자조금을 구분하지 않고 임의자조금은 폐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제정안은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이 규정하는 자조금의 용도 중
①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을 추가하고, ② 안 제32조에서 자조금
운용 평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삭제하여 안 제27조에 반영함.

① 생산·유통 자율조절은 해당 농산물 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한 자
조금단체의 사업임에도 자조금의 용도에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추가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임.

② 한편, 자조금 운용 평가 방식 변경에 따라, 자조금단체는 외부전
문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직
접 평가를 받게 됨.

따라서, 평가에 있어 비용을 소모하지 않으므로, 자조금의 용도에서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5) 안 제28조: 거출금의 산정기준

제정안은 회원이 자조금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거출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26조(거출금의 산정기준) 자조금단체는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판매액 등 회원별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거출금의 규모를 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거출금의 산정기준) 자조금단체는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판매액 등 회원별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거출금의 규모를 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거출금의 산정기준) 자조금단체는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판매액 등 회원별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거출금의 규모를 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제정안의 차이 >

현행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① 의무거출금은 농수산업자별로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한도는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은 제2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는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삭 제>	제28조(거출금의 산정기준) 자조금단체는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판매액 등 회원별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거출금의 규모를 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자조금단체는 거출금의 금액을 회원별로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판매액 등 경영규모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변경하도록 내용을 단순 명료하게 표현 - 거출금 한도에 대한 규정 삭제 - 산정기준 변경규정 삭제 - 거출금 한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평균 거래가격에 대한 내용 삭제

현행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급·수요의 과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여 그 평균 거래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제정안은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비교하여, ① 거출금의 한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② 산정기준의 변경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① 현재 평균거래가격의 1%인 거출금의 한도(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제8조제1항 본문)를 삭제할 경우, 각 자조금단체마다 정관 기재 사항인 거출금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각 자조금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임.

또한 ②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산정기준을 경영규모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데, 이에 따라 모든 자조금단체에서 회원의 경영규모에 따른 거출금 산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임.

(6) 안 제29조: 거출금의 납부

제정안은 회원이 자조금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거출금의 납부 절차에 대하여 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27조(거출금의 납부) ①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 내에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자조금단체 회원이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납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거출금을 직접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자조금단체는 회원에게 거출금 납부안내서를 직접 발송하거나 공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9조(거출금의 납부) ①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 내에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자조금단체 회원이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납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거출금을 직접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자조금단체는 회원에게 거출금 납부안내서를 직접 발송하거나 공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29조(거출금의 납부) ①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 내에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자조금단체 회원이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납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거출금을 직접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자조금단체는 회원에게 거출금 납부안내서를 직접 발송하거나 공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정관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으로 정한다.	으로 정한다.	으로 정한다.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제정안의 차이 >

현행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농수산물물의 경우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농수산업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먼저 납부한 의무거출금의 금액만큼 감액하여 다른 자조금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③ 농수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거출금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농수산업자의 의무거출금을 대납하여야 하고, 대납 후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		제29조(거출금의 납부) ①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 내에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자조금단체 회원이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납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거출금을 직접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자조금단체는 회원에게 거출금 납부안내서를 직접	- 거출금의 납부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단순 명료하게 표현 - 농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삭제 - 거출금을 2개 이상 자조금단체에 납부하는 회원의 납부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 “대납기관”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단순 명료하게 표현 - 우선 대납 및 사후 청구 규정 삭제 - 이사회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통합으로 인해

현행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농수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발송하거나 공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자조금단체로 수정 -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단순 명료하게 표현 -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부령이 아닌 정관으로 위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제정안은 현행 「농수산자조금법」에 비하여 ① 회원이 두 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거출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방법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② 대납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함.

① 두 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당연회원 자격을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으로 규정하여, 여러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친환경농산물⁵⁵⁾을 생산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제정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두 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대한 납부방법을 삭제하고,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납부방법을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② 대납기관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회원(농수산업자)이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대납기관으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55)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의무자조금에는 친환경농산물자조금이 있음

현재 대납기관을 활용하고 있는 의무자조금단체는 6개 단체로, 모두 농협과 도매시장(공판장)을 대납기관으로 활용함.

< 대납기관을 활용하는 의무자조금단체(6개 단체) 현황 >

연번	자조금단체	대납기관	거출방식
1	(사)한국인삼협회	인삼농협	■ 농가가 경작신고서 작성 후 인삼농협에 제출하고 인삼농협에서 거출금 부과
2	(사)한국배연합회	농협	■ 농협에서 배 봉지 구매 시 거출 * 일부 영농법인, 농가는 자체 구매내역을 연합회에 자진 신고 후 납부
3	(사)제주감귤연합회	농협(공제) *농협 출하시	■ 생산자단체는 판매 실적 기준 부과 ■ 농협 계통출하 시 정산금액에서 공제 * 농협 미출하 농가는 매출 서류 제출 시 고지서 발급
4	(사)한국참외 생산자협의회	농협 *농협 출하시	■ 생산자단체는 판매 실적 기준 부과 ■ 농협에서 포장박스 구매 시 거출 * 미구매 농가는 농업경영체등록정보 기준 고지서 발급
5	(사)한국화훼 자조금협의회	① 도매시장 (공제) ② 농협	■ 공영 도매시장 출하 시 정산금액에서 공제 ■ 경기도 일부 지역(고양시, 파주시) 농가는 한국화훼농협에서 면적기준 거출 *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재배면적 서류를 협의회에 제출 시 고지서 발급
6	(사)한국난재배자 협회	공판장 (공제)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재배분수신고서 기준 고지서 발급 ■ 미거출 농가 대상 공판장 출하 시 정산금액에서 공제 ■ 전시 판매장은 판매 실적 기준 부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5. 2. 6. 제출

제정안은 직접 납부가 어려운 경우 대납기관이 납부하게 하도록 하는 회원의 의무와 대납기관의 사후 청구에 관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함.

대납기관으로 하여금 거출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도록 하는 회원의 의무를 삭제하더라도,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안 제45조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안 제30조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 역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대납기관의 사후 청구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은 거출금의 납부와 관련한 사항을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하므로, 사후 청구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자조금단체의 정관에서 대납 방식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안 제30조: 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제정안은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28조(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지원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과 제정안의 차이 >

현행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확대 및 거출율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내용 추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제정안은 임의자조금 개념의 삭제에 따라 기존에 의무자조금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규정’을 모든 자조금에 적용되도록 규정함.

한편, 현행법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역시도 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의 취지는 임의자조금 개념 삭제 및 거출금 미납자 지원제한 강화를 통하여 자조금단체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농업인등에 대하여 거출금 납부가 의무화된다면 무임승차 우려가 완화될 수 있을 것임.

다만, 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김선교의원안은 지원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만희·박덕흠의원안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지원 제한 시 거출금 미납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의적으로 지원을 전부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므로, 이만희·박덕흠의원안처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8) 안 제31조: 거출금의 수납위탁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거출금 수납 업무를 수납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29조(거출금의 수납위탁) ①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등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 또는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수납 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제11조(거출금의 수납위탁) ①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등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 또는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수납 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제31조(거출금의 수납위탁) ①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등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 또는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수납 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 관련 조문(박덕흠의원안 기준으로, 세 건의 제정안은 조 번호를 제외한 사항이 동일함)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④ 회원 또는 대납기관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거출금은 자조금단체가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⑤ 수납기관은 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원 또는 대납기관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거출금은 자조금단체가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⑤ 수납기관은 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원 또는 대납기관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거출금은 자조금단체가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⑤ 수납기관은 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제정안의 차이 >

현행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③ 수납기관이 의무거출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금액에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지연된 기간만큼 적용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신 설> <삭 제>	제31조(거출금의 수납위탁) ①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등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 또는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 이사회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통합으로 인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자조금단체로 수정 - 농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삭제 - 조문을 분리하여 내용 수정 - 조문을 분리하여 내용 수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내용을 삭제 - 농산 자조금의 법적 성격 전환에 따라 수산 자조금 분리하기에 농수산업자는 삭제하고 회원으로 표기 - 수납기관의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조문 삭제

현행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의무거출금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징수하여야 한다. ⑤ 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거출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회원 또는 대납기관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거출금은 자조금단체가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⑤ 수납기관은 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산 자조금의 법적 성격 전환에 따라 수산 자조금 분리하기에 농수산업자는 삭제하고 회원으로 표기 - 조문 수정 (의무거출금→ 거출금) - 조문 수정 (의무거출금→ 거출금) - 농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물 소관사항은 삭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현재 의무자조금단체 중 3개 자조금단체(인삼, 배, 화훼)는 모든 거출금을 대납기관을 통하여 거출하고, 그 외 15개 자조금단체는 직접 회원으로부터 거출금을 거출함.

15개 자조금단체가 회원으로부터 직접 거출금을 거출하는 방식은 제각각이나, 대체로 회원에게 고지서(지로)를 발급하여 정해진 수납기관(은행 등)에 거출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음.

< 의무자조금단체별 거출금 거출방법 현황 >

연번	자조금단체	직접거출여부	대납기관	거출방식
1	(사)한국인삼협회	-	인삼농협	■ 농가가 경작신고서 작성 후 인삼농협에 제출하고 인삼농협에서 거출금 부과

연번	자조금단체	직접거출여부	대납기관	거출방식
2	(사)한국 친환경 농업협회	직접거출	-	■ 친환경 인증 완료 후 인증면적에 따라 고지서 발급
3	(사)한국 백합 생산자중앙연합회	직접거출	-	■ 연합회 시·도 본부에서 자체 회원명단 대상 고지서 발급
4	(사)한국 키위 연합회	직접거출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고지서 발급 ■ 생산자단체는 판매 실적 기준 부과
5	(사)한국 배 연합회	-	농협	■ 농협에서 배 봉지 구매 시 거출 * 일부 영농법인, 농가는 자체 구매내역을 연합회에 자진 신고 후 납부
6	(사)한국 파프리카 생산자자조회	직접거출	-	■ 자체 회원명단 대상 고지서 발급
7	(사)한국 사과 연합회	직접거출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고지서 발급 ■ 생산자단체는 판매 실적 기준 부과
8	(사)제주 감귤 연합회	직접거출 *생산자단체 대상	농협(공제) *농협 출하시	■ 생산자단체는 판매 실적 기준 부과 ■ 농협 계통출하 시 정산금액에서 공제 * 농협 미출하 농가는 매출 서류 제출 시 고지서 발급
9	(사)대한 두채 협회 *콩나물	직접거출 *협회 지역지부		■ 협회 지역지부 22개소에서 콩나물콩 구매 시 거출
10	(사)한국 참외 생산자협의회	직접거출 *생산자단체 대상	농협 *농협 출하시	■ 생산자단체는 판매 실적 기준 부과 ■ 농협에서 포장박스 구매 시 거출 * 미구매 농가는 농업경영체등록정보 기준 고지서 발급

연번	자조금단체	직접거출여부	대납기관	거출방식
11	(사)한국 화훼 자조금협의회	-	①도매시장 (공제) ②농협	■ 공영 도매시장 출하 시 정산금액에서 공제 ■ 경기도 일부 지역(고양시, 파주시) 농가는 한국화훼농협에서 면적기준 거출 *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재배 면적 서류를 협의회에 제출 시 고지서 발급
12	(사)한국 포도 협회	직접거출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고지서 발급 ■ 생산자단체는 판매 실적 기준 부과
13	(사)한국 마늘 연합회	직접거출	-	■ 경작신고 농가 대상 고지서 발급 * 경작신고 미실시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고지서 발급 ■ 생산자단체는 판매 실적 기준 부과
14	(사)한국 양파 연합회	직접거출	-	■ 경작신고 농가 대상 고지서 발급 * 경작신고 미실시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고지서 발급 ■ 생산자단체는 판매 실적 기준 부과
15	(사)한국 뽕은감 협회	직접거출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고지서 발급 ■ 생산자단체는 판매 실적 기준 부과
16	(사)한국 복숭아 생산자협의회	직접거출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고지서 발급 ■ 생산자단체는 판매 실적 기준 부과
17	(사)한국 차 자조회	직접거출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고지서 발급
18	(사)한국 난 재배자협회	직접거출	공판장 (공제)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재배분수신고서 기준 고지서 발급 ■ 미거출 농가 대상 공판장 출하 시 정산금액에서 공제 ■ 전시 판매장은 판매 실적 기준 부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5. 2. 6. 제출

제정안은 현행법에서 ① 수납기관이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삭제하고, ② 수납기관의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 납부 규정을 삭제함.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현행법⁵⁶⁾ 및 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납기관이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수납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제정안은 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삭제함. 그런데 정당한 사유는 행정질서별인 과태료 부과 예외가 되므로, 그 기준을 예시하여 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현행법 시행규칙은 정당한 사유의 기준으로 전쟁, 천재지변, 대규모 정전,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전산시스템 장애를 규정함.⁵⁷⁾ 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임.

둘째, 수납기관의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 납부 규정의 삭제와 관련하여, 자조금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등의 수납기관이 거출금을 수납하였음에도 이를 지연하여 납부하는 사례가 나타

56)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57)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전쟁
2. 천재지변
3. 대규모 정전(停電)
4.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전산시스템 장애

나기 어려울 것임.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수납기관이 지연하여 납부한 사례가 없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9) 안 제32조: 자조금 운용 평가

제정안은 자조금단체로 하여금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 및 자조금의 운용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평가받도록 하는 자조금 운용 평가 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30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 및 자조금의 운용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제20조에 따른 개선등 조치명령, 제22조에 따른 자조금의 통합 및 분리, 제23조에 따른 자조금 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지원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 및 자조금의 운용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제32조에 따른 개선 등 조치명령, 제4조에 따른 자조금의 통합 및 분리, 제5조에 따른 자조금 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지원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 및 자조금의 운용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제21조에 따른 개선 등 조치명령, 제24조에 따른 자조금의 통합 및 분리, 제25조에 따른 자조금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지원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제정안의 차이 >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 및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기관의 자조금단체 운용 평가 조문은 삭제하고 자조금단체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의무 신설 -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삭제
	<신 설>	②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 및 자조금의 운용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조금단체의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 및 자조금 운영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제21조에 따른 개선등 조치명령, 제24조에 따른 자조금의 통합 및 분리, 제25조에 따른 자조금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지원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자조금단체 운용 평가 제도 변화에 따른 내용 신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평가업무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 외부전문기관 평가 삭제에 따른 지정제도 삭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	<삭 제>		- 외부전문기관 평가 삭제에 따른 지정제도 삭제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평가의 절차 및 내용, 평가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 자조금단체 운용 평가에 관한 조문을 수정하여 해당 조문 삭제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자조금단체로 하여금 2년마다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⁵⁸⁾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출받은 보고서를 근거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음.⁵⁹⁾

또한, 자조금단체로 하여금 별도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지 않음.

현재 대부분의 품목이 최근 2~3년간 소비 홍보를 중심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계획을 반복하고 있어 중장기 과제 및 목표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① 자조금단체가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이 제

58) 수산물자조금의 경우 해양수산물부장관

59)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물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받은 보고서를 직접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자조금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지원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② 자조금단체로 하여금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현행법과 제정안의 자조금 운용 평가 비교 >

연번	구분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제정안
1	평가주기	- 2년	- 매년
2	평가자	- 외부 전문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	제출보고서	-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	-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 및 자조금의 운용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
4	평가결과 활용	- 관련 사항 없음	- 조치명령, 출연 또는 지원 등의 근거로 활용 가능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및 제정안(2205471, 2205614, 2205702)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4.

제정안의 취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양한 정책수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조금단체의 중장기 과제 및 목표 제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계획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정책 수단의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자조금단체의 성과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각 자조금단체가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자조금이 해당 품목의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장기적 로드맵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하는 자조금 중장기 발전계획 예시는 다음과 같음.

자조금 중장기 발전계획 예시(마늘)

1. 마늘 산업 현황

	2002년	2021년	증 감	주산지(전체 면적의 73.6%)
생산량(천 톤)	394	309	△ 21.5% 감소	서안, 태안, 고흥, 해남, 신안, 무안, 의성, 영천, 고령, 군위, 창령, 남해, 합천, 제주, 서귀포
재배면적(천 ha)	33	22	△ 33.3% 감소	
수입량(천 톤)	27	44.9	+ 66.3% 증가	

2. 자조금단체 현황(설립 2019.7월)

- 거출금 납부 회원('22년) : (농업인) 22,595명 (농협 등) 96개소
 - * 농업경영체기준 마늘 생산자('20년) : 137,989명, 의무자조금단체 승인 기준 : 전국 재배면적 20,232ha 대비 63.8%(12,972ha) 참여
- 거출현황('22년) : 848백만원/(농업인) 536백만원, (농협 등) 313

3. 자조금단체 중장기 목표('24~'28)

- 가입률 제고와 거출금 확대를 자율적 수급관리 기반 확립
 - * (회원) 당연회원 50%이상(69천명) 참여, (거출목표) 40억원
 - 현행 체제에서도 수행 가능한 자율적 수급관리 방안 발굴 및 이행

4. 실행계획(안)

- ① 자조금제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강화로 당연회원 확대
 - 기관(KREI·농협·aT 등) 및 지자체 농업인 교육과정내 '자조금' 교육 신설('24년)
 - * 교육내용 : 자조금제도 이해, 경작신고 이행교육, 마늘 생산·품질 관련 기술컨설팅 등
- ② 경작신고 활성화를 통한 재배면적 관리체계 구축
 - 지자체 및 KREI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경작신고율 확대
 - * 경작신고율 : '22년 시범 → '23년산 31% → '24년산 60% → '27년산 80%
- ③ 생산유통자율조절 등 자율적 수급 조절 추진

- 시장출하규격 설정을 통하여 과잉시 저품질 상품 유통제한, 출하시기 조절 등 시행, 부족시 저품질 상품 출하 독려 등 추진
- 마늘(대서종)의 경우는 생강 사례*와 같이 TRQ 통한 자유통관 관리(부족시 씨마늘 TRQ 도입) 추진

* (생강사례) 농협생강조합협의회(의무자조금 미조성)가 정부로부터 TRQ 도입 권한을 부여받아, TRQ 수입 관리를 통한 국내 생강 수급 관리 추진

- 공급 과잉시 : TRQ 생강 미도입하고, 국산 생강을 차년도 씨생강으로 활용
- 공급 부족시 : 국산 생강은 시중 유통하고, TRQ 생강을 차년도 씨생강으로 활용

※ 위 예시를 참고로 하여 각 단체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10) 안 제33조: 과오납금의 환급

제정안은 회원이 착오 등으로 거출금을 잘못 또는 더 많이 납부한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31조(과오납금의 환급)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착오 등으로 납부한 거출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회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13조(과오납금의 환급)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착오 등으로 납부한 거출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회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33조(과오납금의 환급)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착오 등으로 납부한 거출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회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과 제정안의 차이 >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농수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33조(과오납금의 환급)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착오 등으로 납부한 거출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회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농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임의자조금과 의무자조금을 구분하지 않고 임의자조금은 폐지하기에 내용 수정하여 단순 명료하게 표현 - 농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삭제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제정안은 현행 「농수산물조금법」의 농산물조금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여 제정하면서, 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29조의 사항을 해양수산물 소관사항을 삭제하여 안 제33조로 반영하려는 것임.

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회원이 거출금을 잘못 납부한 경우에 대하여 명확한 대응절차가 마련될 것이므로, 제정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11) 안 제34조: 자조금회계의 구분

제정안은 자조금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건전한 자조금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32조(자조금회계의 구분)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조금회계의 구분)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자조금회계의 구분)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관련 조문(박덕흠의원안 기준으로, 세 건의 제정안은 조 번호를 제외한 사항이 동일함) 제43조(벌칙) ② 제34조제3항⁶⁰⁾을 위반하여 회계처리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양벌규정)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자조금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제정안의 차이>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자조금회계의 구분)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현행법 제17조제3항 조문 이동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자조금은 회원의 거출금을 통하여 조성 및 운용되는 것이므로, 건전한 자조금 운용을 위하여는 그 회계를 자조금단체의 다른 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

60) 제34조의 오기로 보임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자조금회계를 구분하고, 이를 위반하여 회계 처리를 한 자 및 자조금단체에게 벌칙을 적용하려는 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12) 안 제35조: 공시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35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33조(공시)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시)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공시)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관련 조문(박덕흠의원안 기준으로, 세 건의 제정안은 조 번호를 제외한 사항이 동일함) 제4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35조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과 제정안의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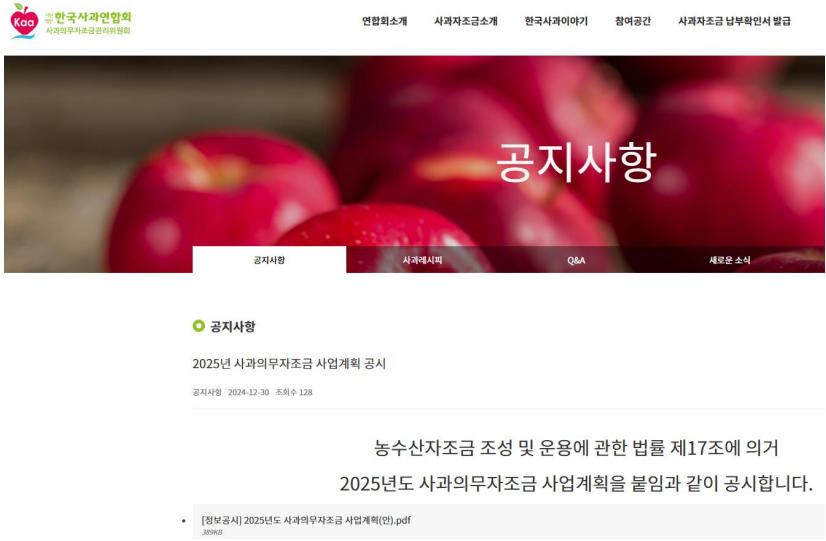
「농수산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⑥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공시)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현행법 제17조제6항 조문 이동 - 농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른 자구 수정(해양수산부령 삭제) - 공시 대상에 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현행법령은 관리위원회에게 ① 다음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과 ②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자금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공시하도록 규정함. 이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⁶¹⁾

이에 따라 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사항을 공시하고 있음.

< 현행법령에 따른 자조금 관련 공시 사례 >

관리위원회	사례
한국사과연합회 사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공지사항 2025년 사과의무자조금 사업계획 공시 공지사항 2024-12-30 조회수 128 농수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2025년도 사과의무자조금 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첨보공시] 2025년도 사과의무자조금 사업계획(안).pdf 30910
한국뽕은감협회 자조금관리위원회	 협회게시판 2023년 (사)한국뽕은감협회 자조금 사업 결산 보고서 작성자 뽕은감관리자 작성일 2024-03-25 16:09 조회 396 2023년 (사)한국뽕은감협회 자조금 사업 결산 보고서를 업로드합니다.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2023년-뽕은감자조금-사업-결산보고서.hwp

자료: 한국사과연합회 및 한국뽕은감협회 홈페이지, 2025. 2. 4. 확인

6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제정안은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상 공시 제도에서 자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 대상에 포함하여 안 제35조에 반영하려는 것임.

회계처리 등 자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건전한 자조금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바. 지역자조금 제도 도입 등 자조금제도의 확장

제정안은 지역자조금의 구성을 허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업인등 현황을 포함한 통계자료를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하도록 하며, 자조금단체가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조금단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또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규정하며, 자조금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34조(지역자조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 관리 및 품목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 출하 시기에 따라 주된 생산지를 중심으로 지역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지역자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지역자조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 관리 및 품목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 출하 시기에 따라 주된 생산지를 중심으로 지역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지역자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지역자조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 관리 및 품목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 출하 시기에 따라 주된 생산지를 중심으로 지역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지역자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업인등 현황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	제36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업인등 현황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	제37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업인등 현황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40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4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36조(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① 자조금단체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거출금 산정 및 부과 등을 위하여 회원 명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업인들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재배지의 주소와 면적 및 경영체 등록번호, 법인명)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거출금 산정 및 부과 등 회원 명부 작성의 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회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조금단체 회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	제37조(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① 자조금단체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거출금 산정 및 부과 등을 위해 회원 명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업인들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지의 주소와 면적 및 경영체 등록번호, 법인명)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거출금 산정 및 부과 등 회원 명부 작성의 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회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조금단체 회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	제38조(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① 자조금단체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거출금 산정 및 부과 등을 위해 회원 명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업인들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지의 주소와 면적 및 경영체 등록번호, 법인명)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거출금 산정 및 부과 등 회원 명부 작성의 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회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조금단체 회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법」에 따른다. 제3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조금 신규 설치 지원 2. 자조금 운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3. 자조금 통합거출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원 4. 자조금 통합 콜센터 운영 및 지원 5. 자조금 인식 개선을 위한 통합 홍보 6. 교육·홍보 등 분야별 매뉴얼 개발 7. 자조금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역량 강화 지원 8. 제35조에 따른 통계등 작성·관리 및 제공 9. 그 밖에 자조금단체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	법」에 따른다. 제38조(자조금통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를 전담하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조금 신규 설치 지원 2. 자조금 운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3. 자조금 통합거출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원 4. 자조금 통합 콜센터 운영 및 지원 5. 자조금 인식 개선을 위한 통합 홍보 6. 교육·홍보 등 분야별 매뉴얼 개발 7. 자조금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역량 강화 지원 8. 제36조에 따른 통계등 작성·관리 및 제공 9. 그 밖에 자조금단체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	법」에 따른다. 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조금 신규 설치 지원 2. 자조금 운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3. 자조금 통합거출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원 4. 자조금 통합 콜센터 운영 및 지원 5. 자조금 인식 개선을 위한 통합 홍보 6. 교육·홍보 등 분야별 매뉴얼 개발 7. 자조금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역량 강화 지원 8. 제37조에 따른 통계등 작성·관리 및 제공 9. 그 밖에 자조금단체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거출을 위하여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자조금단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거출을 위하여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자조금단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거출을 위하여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자조금단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감독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 자조금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자조금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감독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 자조금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자조금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감독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 자조금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자조금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자조금통합지원센터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의무자조금 미도입 품목 중 지역 편중성이 높아 지역단위로 경쟁력 제고 및 수급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지역자조금 조성의 필요성이 있음.

또한, 신규자조금 조성 지원, 통합거출시스템 구축 등 자조금단체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지역자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등, 자조금제도의 확장에 관하여 규정하는 제정안에 대하여 수용함.

2) 검토의견

(1) 제36조 신설: 지역자조금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출하 시기에 따라 주된 생산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자조금 설치를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36조 신설).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34조(지역자조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 관리 및 품목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 출하 시기에 따라 주된 생산지를 중심으로 지역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지역자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지역자조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 관리 및 품목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 출하 시기에 따라 주된 생산지를 중심으로 지역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지역자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지역자조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 관리 및 품목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 출하 시기에 따라 주된 생산지를 중심으로 지역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지역자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국 단위의 자조금을 도입하지 않은 품목 중 일부 품목의 경우 생산지가 분산되어 전국적인 자조금 형태로 농업인들을 조직화 및 수급 관리하는 것은 어려우나, 작형별 지역 편중성이 높아 지역단위로는 조직화 및 수급 관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음.

가령, 현재 임의자조금 품목에 해당하는 배추의 경우 그 생산지가 전국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작형별로 구분하면 여름배추의 경우 강원

에서 84%, 겨울배추의 경우 전남에서 94%를 생산하는 등 지역 편중성이 뚜렷하게 나타남.

배추 외에도 지역 편중이 나타나는 품목에는 겨울무(제주 98%), 겨울대파(전남 67%), 당근(제주 52.4%), 브로콜리(제주 44.5%), 시금치(경남 42%), 자두(경북 82%), 유자(전남 75%) 등이 있음.

제정안은 임의자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자조금의 형태를 의무자조금으로 단일화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라 설치된 임의자조금은 경과규정에 따라 1년 내에 의무자조금 형태로 정관을 변경하고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음.⁶²⁾

그런데 배추 등과 같이 지역 편중이 나타나는 품목에 설치된 임의자조금의 경우, 지역 단위의 조직화는 가능할 수 있으나 전국적인 조직화가 어려운 특성상 제정안에 따른 자조금단체 및 자조금 형태로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임.

이에 제정안은 지역자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작형별 지역 편중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역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62) 김선교의원안·이만희의원안·박덕흠의원안

부칙 제4조(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자조금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이 법 제8조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자조금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설립된 자조금단체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지역자조금이 도입되는 경우 지역 단위의 조직화가 가능한 품목의 경우에도 지역자조금 설치·운영을 통하여 지역 단위 수급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제정안의 취지를 인정할 수 있어 보임.

다만, 제정안은 지역자조금 설치의 승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자조금의 정의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⁶³⁾ 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지역자조금 제도는 전국 단위의 조직화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지역 단위라는 완화된 형태의 농산자조금을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제정안은 지역자조금을 안 제2조제1호의 농산자조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일부분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제정안은 제2조제1호에서 ‘농산자조금’을 정의한 후 제3조에서 이를 ‘자조금’으로 약칭하고 있을 뿐, 지역자조금에 대한 규정에서는 ‘지역자조금’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제정안의 문언만으로는 지역자조금이 ① 지역‘자조금’이므로 제정안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자조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② ‘지역자조금’이므로 농산자조금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자조금이 존재하는 것인지 그 해석이 모호함.

63) 김선교의원안(제34조)·이만희의원안(제35조)·박덕흠의원안(제36조)

제36조(지역자조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 관리 및 품목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 출하 시기에 따라 주된 생산지를 중심으로 지역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지역자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특히 지역자조금을 농산자조금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본다면 농산자조금에 관한 제정안의 규정들 역시 모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어떠한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임.

따라서 지역자조금과 농산자조금의 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지역자조금을 정의할 필요가 있음. 가령 안 제36조제1항에서 지역자조금의 정의를 풀어 쓰고, 이를 지역자조금으로 약칭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임.

(2) 제37조: 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업인 등 현황을 포함한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35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업인등 현황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 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40	제36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업인등 현황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 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41	제37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업인등 현황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 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42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 조문(박덕흠의원안 기준으로, 세 건의 제정안은 조 번호를 제외한 사항이 동일함) 제43조(벌칙) ①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농수산물조금법」과 제정안의 차이>

「농수산물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28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농수산업자 현황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관련 통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통계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		제37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업인등 현황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	- 농수산업자 → 농업인등 * 농산물조금 분리에 따라 수산업자 삭제 * 현행 법령상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농산업자 대신 농업인 사용 - 농산물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삭제

「농수산물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4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근거 조항을 수정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제정안은 농산물조금에 관한 사항을 현행 「농수산물조금법」에서 분리하여 규정함에 따라, 현행 「농수산물조금법」 제28조의 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조문정비를 반영하여 안 제37조에 규정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현행 법령상 정의가 정립되지 않은 농산업자 대신 안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인등’⁶⁴⁾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64) 참고로 안 제2조제4호의 ‘농업인등’은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③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임

또한, 현행 「농수산물조금법」은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이를 안 제43조로 반영하여 그대로 규정함.

안 제37조는 법률의 분리 제정과정에서 제도 변화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 외에는 기존 「농수산물조금법」상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한편, 안 제37조제3항에서는 안 제4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비밀 누설 금지 등의 행정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안 제42조제2항은 전담기관 및 단체에의 업무 위탁 규정이고,⁶⁵⁾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 규정인 안 제39조제2항에서는 안 제37조에 따른 통계 등 작성·관리 및 제공을 전담기관의 업무로 규정함.

따라서, 제정안에 따라 통계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도 비밀 누설 금지 등의 행정상 의무가 부여될 것임.

65) 박덕흠의원안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38조: 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업인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38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36조(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① 자조금단체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거출금 산정 및 부과 등을 위하여 회원 명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업인들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재배지의 주소와 면적 및 경영체 등록번호, 법인명)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거출금 산정 및 부과 등 회원 명부 작성의 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회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	제37조(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① 자조금단체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거출금 산정 및 부과 등을 위해 회원 명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업인들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지의 주소와 면적 및 경영체 등록번호, 법인명)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거출금 산정 및 부과 등 회원 명부 작성의 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회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	제38조(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① 자조금단체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거출금 산정 및 부과 등을 위해 회원 명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업인들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지의 주소와 면적 및 경영체 등록번호, 법인명)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거출금 산정 및 부과 등 회원 명부 작성의 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회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조금단체 회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조금단체 회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조금단체 회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제정안의 차이>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28조의2(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① 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출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및 재배면적을 말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출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한 자료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 및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제38조(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① 자조금단체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거출금 산정 및 부과 등을 위해 회원 명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업인등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재배지의 주소와 면적 및 경영체 등록번호, 법인명)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거출금 산정 및 부과 등 회원 명부 작성의 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회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	-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농업인등의 개인정보 항목(생년월일, 재배지의 주소와 면적 및 경영체 등록번호, 법인명)을 추가함 - 농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삭제 - 농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삭제 - 농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삭제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조금단체 회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삭제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제정안은 농산물자조금에 관한 사항을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서 분리하여 규정함에 따라,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제28조의2의 농업경영정보 등의 이용에 관한 규정에서 ① 요청가능한 개인정보 항목과 ② 개인정보 사용 가능 목적을 추가하여 안 제38조로 반영하려는 것임.

첫째, 안 제38조제1항에서 제정안이 추가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개인정보 항목은 ① 생년월일, ② 재배지 주소, ③ 경영체 등록번호, ④ 법인명인데, 자조금단체가 회원명부 작성을 통하여 원활하게 회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로 이해되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둘째, 안 제38조제2항에서 제정안이 추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사용 가능 목적은 거출금 산정 및 부과인데, 제정안이 임의자조금을 삭제하고 의무자조금만을 남기고 있는 점, 안 제3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도 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활한 거출금 산정 및 부과가 요구될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4) 제39조 신설: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정안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신설).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3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조금 신규 설치 지원 2. 자조금 운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3. 자조금 통합거출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원 4. 자조금 통합 콜센터 운영 및 지원 5. 자조금 인식 개선을 위한 통합 홍보 6. 교육·홍보 등 분야별 매뉴얼 개발 7. 자조금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역량 강화 지원 8. 제35조에 따른 통계등 작성·관리 및 제공 9. 그 밖에 자조금단체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제38조(자조금통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를 전담하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조금 신규 설치 지원 2. 자조금 운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3. 자조금 통합거출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원 4. 자조금 통합 콜센터 운영 및 지원 5. 자조금 인식 개선을 위한 통합 홍보 6. 교육·홍보 등 분야별 매뉴얼 개발 7. 자조금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역량 강화 지원 8. 제36조에 따른 통계등 작성·관리 및 제공 9. 그 밖에 자조금단체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조금 신규 설치 지원 2. 자조금 운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3. 자조금 통합거출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원 4. 자조금 통합 콜센터 운영 및 지원 5. 자조금 인식 개선을 위한 통합 홍보 6. 교육·홍보 등 분야별 매뉴얼 개발 7. 자조금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역량 강화 지원 8. 제37조에 따른 통계 등 작성·관리 및 제공 9. 그 밖에 자조금단체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농협경제주에 위탁하여 법 개정 지원, 신규 자조금 단체 육성을 위한 의무자조금 설치 지원, 자조금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주요 실적 >

- ☐ 신규 임의자조금 단체 설치 지원
 - ('24년) 버섯, 논콩
- ☐ 자조금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국 대상 교육
 - e나라도움-세무·회계, 통합관리메뉴얼 등 교육 / 5회, 71명
- ☐ 자조금통합콜센터 운영(전담직원 3명)을 통한 민원대응
- ☐ 자조금 통합거출시스템 구축(전산 등)
- ☐ 양파·마늘 '경작출하신고' 활성화를 위한 주산지 지자체, 품목단체의 농업인 대상 교육
 - 8회 / 농협·행정공무원, 농업인 등 약 1,500여명
- ☐ 자조금단체 사업 운용 평가 및 '25년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24년)
- ☐ 자조금 인식개선을 위한 통합 홍보
 - 라디오, 포스터, 현수막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그런데 동 센터는 현재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자조금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추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제정안은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자조금단체 육성 및 지원이 가능할 것이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안 제39조제2항에서는 전담기관의 업무로 '자조금 통합거출시스템⁶⁶⁾의 개발 및 운영 지원(제3호)'과 '제37조에 따른 통계 등 작성·

관리 및 제공(제8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함.

두 가지 업무는 본래 안 제37조와 제40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업무인바,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전담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하는 안 제42조제2항을 통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전담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정안은 업무의 위탁을 전제로 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기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제정안에는 전담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의 일반적인 근거 규정만 있음.

명시적으로 해당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전담기관의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 경우 해당 업무가 본래부터 전담기관의 업무인 것으로 해석되어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전담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조문정비가 필요해 보임.

가령 유사 입법례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함.

이에 따라 ① 정보시스템의 근거 규정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②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근거 규정에 업무로서 위탁받

66) 이는 안 제39조제2항제3호의 ‘자조금 통합거출시스템’은 안 제40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거출을 위하여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은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명시하고 있음.⁶⁷⁾

< 업무 위탁 관련 유사 입법례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관리되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및 노인 일자리전담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을 제24조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 ⑥ 개발원은 제9조제3항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의 양성 및 연수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
6.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7.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3.

67) 참고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정안과 같은 일반적인 업무 위탁 규정도 존재하며(제27조제3항), 이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업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규정함(제24조제6항제7호).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제정안은 ① 통계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인 안 제37조와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근거 규정인 안 제40조에 명시적인 위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또한, ② 전담기관의 근거 규정인 안 제39조에서 전담기관의 업무에 제37조와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어 보임.

(5) 제40조 신설: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거출을 위한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신설).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38조(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거출을 위하여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자조금단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거출을 위하여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자조금단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거출을 위하여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자조금단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 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별도의 제도적인 거출금 납부 체계·시스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각 의무자조금단체마다 의무거출금 부과·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자조금단체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4개 품목의 자조금단체가 거출금 부과를 위하여 민간기업에 개인정보 제공 및 거출금 수납업무를 위탁하고 연평균 3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를 지급함.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자조금통합지원센터에서는 2020년부터 의무거출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⁶⁸⁾함.

그러나 시스템의 기능이 단순히 부과 및 거출 기능 등에 한정되어 자조금단체 사무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위한 고도화가 요구되었음.

이에 제정안은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각 자조금단체가 회원목록, 거출금 수납 현황, 사업 운영 관리 등을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거출금 수납 및 사업 운영 관리 등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되어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에서 제정안과 같이 시스템의 구축·운영,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다만, 안 제40조제2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약칭한

68) 의무자조금 중 키위, 참외, 양파, 마늘, 배, 복숭아, 뽕은감

바가 없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이를 “요청을 받은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시스템 관련 유사 입법례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물류기업,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하면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처리·조치 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통합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9억 3,700만원(연평균 1억 8,7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연평균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의 구축 및 운영	350	250	85	124	128	937	187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김선교의원안·이만희의원안 및 박덕흠의원안), 2024. 12. 17.

(6) 제41조: 지도·감독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단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39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감독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 자조금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자조금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감독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 자조금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자조금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감독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 자조금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자조금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제정안의 차이 >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32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임의자조금위원회,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자조금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감독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 자조금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자조금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삭제 - 제정안이 삭제하고 있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임의자조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 -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삭제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제정안은 농산물자조금에 관한 사항을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서 분리하여 규정함에 따라,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제32조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안 제41조로 반영하려는 것임.

제정안이 조문을 정비하고 있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① 농산자조금만을 분리하여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을 삭제하고, ②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임의자조금 등 제정안이 삭제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농산자조금의 건전한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는 관련 정책을 소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도·감독이 요구될 것이므로, 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7) 제4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거나, 업무의 일부를 지정된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2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자조금통합지원센터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제정안의 차이>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정부출연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농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삭제 - 위임 대상 추가(산림청장) - 농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삭제 - 전담기관 지정에 따라 해당 전담기관에 업무를 위탁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제정안은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비교하여 ① 권한의 위임 대상에 산림청장을 추가하고, ② 업무의 위탁 대상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제정안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또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 또는 단체로 변경함.

① ‘권한의 위임’ 대상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을 대상에 추가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농산물 자조금 중 임산물 품목을 하는 자조금에 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농산물 중 임산물 품목 자조금에 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 보이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현재 자조금이 구성되어 있는 임산물에는 밤(임의자조금)이 있음.

② ‘업무의 위탁’ 대상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전담기관 지정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안 제39조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조금단체 육성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특히, 제정안은 안 제39조에서 전담기관의 업무로 ‘자조금 통합거출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40조에서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규정하는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안 제40조에 따른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을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42조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 ‘지정된 전담기관’을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전담기관 외의 위탁 대상인 ‘단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일 수 있으므로 ‘관련 단체’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이 위탁기관을 공공기관으로만 한정하는데, 제정안에 따라 지정되는 전담기관은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위탁 대상 기관의 범위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⁶⁹⁾

69) 참고로, 현재 법령상 설치 근거 없이 운영되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닌 농협 경제지주가 위탁운영하고 있음

사. 벌칙

제정안은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41조(벌칙) ①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를 위반하여 회계처리는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①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를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벌칙) ①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는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양벌규정)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자조금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양벌규정)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자조금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양벌규정)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자조금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자조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에 따른 자조금의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자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조금을 폐지한 자 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5.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6.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유통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조금단체가 결정한 거출금 납부기한 이내에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4. 제33조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5.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아니한 자 6.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조금을 폐지한 자 6.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조금단체가 결정한 거출금 납부기한 이내에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 제28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유통한 자 5.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	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조금을 폐지한 자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5.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6.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유통한 자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조금단체가 결정한 거출금 납부기한 이내에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4.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5조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된 개인정보를 즉시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한 자 7.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고 또는 관계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파기하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현행 「농수산물조금법」과 같은 내용으로 제정안의 조문에 맞춰 수정하고 있는 제정안의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조항을 수용함.

2) 검토의견

(1) 제43조: 벌칙

제정안은 ① 통계 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누설, 권한 없는 처리 및 부당한 목적 사용과 ② 자조금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41조(벌칙) ①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② 제32조를 위반하여 회계 처리하는 한 자는 <u>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42조(벌칙) ①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② 제14조를 위반하여 회계 처리를 한 자는 <u>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43조(벌칙) ①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②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하는 한 자는 <u>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 관련 조문(박덕흠의원안 기준으로, 세 건의 제정안은 조 번호를 제외한 사항이 동일함) 제37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업인등 현황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4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자조금회계의 구분)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현행 「농수산물조금법」과 제정안의 차이 >

「농수산물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34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벌칙) ①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정안 제43조에서 벌칙 조항 열거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 ⁷⁰⁾ 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2. 제26조제3항 ⁷¹⁾ 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②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정안은 의무자조금 형태만을 인정하므로, 항 본문에서 일괄 규정 - 현행법 제17조제3항은 의무자조금에 관한 경우 - 현행법 제26조제3항은 임의자조금에 관한 경우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제정안은 농산물조금에 관한 사항을 현행 「농수산물조금법」에서 분리하여 규정함에 따라, 현행 「농수산물조금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벌칙 사항을 안 제43조에서 일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형량 등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규정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유사 입법례에서도 ① 안 제43조제1항과 같이 통계등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비밀 누설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안 제43조제2항과 같이 회계 처리

70)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71)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③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벌칙 관련 유사입법례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이력정보의 공개 등) ④ 이력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제30조에 따라 이력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벌칙) ①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5조(회계 구분)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0조(벌칙) ③ 제15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3.

다만, 박덕흠의원안 제43조제2항에서는 ‘안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34조는 항이 존재하지 않아 오기로 보이므로, ‘안 제34조’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제44조: 양벌규정

제정안은 안 제43조의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직접한 당사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인 자조금 단체를 함께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42조(양벌규정)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자조금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양벌규정)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자조금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양벌규정)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자조금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제정안의 차이 >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36조(양벌규정)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자조금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양벌규정)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자조금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 번호 수정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제정안은 농산자조금에 관한 사항을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서 분리함에 따라, 현행법상의 양벌규정을 그대로 안 제44조에서 규정함.

양벌규정은 법인 등 조직체가 주체가 되는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만을 처벌하여서는 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가 어렵기 때문에 두는 규정임.⁷²⁾

제정안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회계처리 위반에 대하여 행위자는 물론 자조금단체에게도 그 책임을 지도록 한다면, 이를 예방하거나 그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한편, 양벌규정은 ① 그 순서는 벌칙 바로 다음에 규정하고, ②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적용형벌·면책규정을 법률에 명시해야 함.⁷³⁾

제정안은 ① 양벌규정을 안 제44조에 규정하여 벌칙인 안 제43조 다음에 규정하고 있고, ②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자조금단체)·적용형벌(안 제43조에 따른 벌금형)·면책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서 자조금단체와 관련된 벌칙규정은 안 제43조제2항에 한정되므로, 안 제44조에서도 ‘제43조의 위반행위’가 아닌 ‘제43조제2항의 위반행위’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72)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796.

73) 위의 책

(3) 제45조: 과태료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5조).⁷⁴⁾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조금을 폐지한 자 -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 제25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6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유통한 자 -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조금을 폐지한 자 -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 제7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8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유통한 자 -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조금을 폐지한 자 -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 제27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6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유통한 자 -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74) 아래의 조문 대비표에서는 제정안마다 각 호의 순서를 조금씩 달리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박덕흠의원안에 맞추어 순서를 수정함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자조금단체가 결정한 거출금 납부기한 이내에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7.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3조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5.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아니한 자 6.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자조금단체가 결정한 거출금 납부기한 이내에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5.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자조금단체가 결정한 거출금 납부기한 이내에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4.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5조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제정안의 차이>

「농수산물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3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1조제3항(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조금을 폐지한 자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조금을 폐지한 자	- 제정안 제45조에서 과태료에 관한 조항 열거 - 조 번호 수정 - 임의자조금 삭제에 따라, 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 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 삭제

「농수산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4. 제21조제7항 전단(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1. 제4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9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게 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유통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농수산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7.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의3. 제28조의2제2항을 위	<삭 제> <삭 제>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5.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6.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유통한 자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조금단체가 결정한 거출금 납부기한 이내에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4.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5조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 임의자조금 삭제에 따라, 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 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 삭제 - 조 번호 수정 - 임의자조금 삭제에 따라 거출금 역시 의무거출금으로 단일화되므로, 관련 조문 정비 - 자조금 운용 평가에 관한 규정 변경 반영 - 제정안 제45조 과태료에 관한 사항 열거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삭제 - 의무거출금 대납 관련 과태료 부과사항 삭제 - 자조금 운용 평가에 관한 규정 변경 반영 - 조 번호 수정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삭제 - 거출금 단일화에 따른 조문 정비 - 농수산업자 → 회원 - 조 번호 수정 - 조 번호 수정 - 조 번호 수정

「농수산자조금법」	⇒	박덕흠의원안	달라지는 점
반하여 제공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공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조 번호 수정 - 제정안은 농산자조금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므로, 해양수산부장관 제외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2. 16.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제정안은 농산자조금에 관한 사항을 현행 「농수산자조금법」에서 분리함에 따라, 현행법상의 과태료 규정을 제정안의 제도 변화 사항에 맞추어 정비한 후 안 제45조에서 규정함.

< 제도 변화에 따른 제정안 과태료 규정 정비사항 >

연번	정비 조항	정비 사유
1	- 안 제45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45조제2항제2호 - 현행법 제37조제2항제3호 삭제	- 개정안이 의무자조금만을 자조금의 형태로 반영함에 따라, 임의자조금 관련 내용 삭제
2	- 현행법 제37조제2항제3호 삭제	- 거출금 납부기한 내에 대납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내용 삭제
3	- 안 제45조제2항제2호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 정비
4	- 안 제45조제2항제3호	- 알리는 대상을 회원으로 명확화

연번	정비 조항	정비 사유
5	- 안 제45조제1항제6호 - 현행법 제37조제2항제5호 삭제	- 자조금 운용 평가 방식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 현행법: 외부전문기관에게 평가를 받은 후 보고서 제출 * 제정안: 보고서 제출시 장관이 평가
6	- 안 제45조제3항	-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삭제

자료: 제정안(2205471, 2205614, 2205702)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3.

구체적인 정비사항은 크게 위의 표와 같은 다섯 가지 사항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대부분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행정상의 의무 규정의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거나, 분리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을 제외하는 것임.

특히, 제정안은 현행법 제37조제2항제3호⁷⁵⁾를 삭제하는데, 이는 제정안이 안 제29조의 대납기관 제도에서 회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의무를 삭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현행법은 회원(농수산업자)이 직접 거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지정된 대납기관에게 그 의무거출금을 대납하게 하도록 규정하여, 회

75)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9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게 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③ 농수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거출금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농수산업자의 의무거출금을 대납하여야 하고, 대납 후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은 안 제29조에서 자조금단체인 대납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회원에게 대납기관으로 하여금 거출금을 납부하게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무이행 확보 수단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다만, 제정안은 여전히 납부기한 내에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거출금 납부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아. 부칙

제정안은 법률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부칙에 규정하려는 것임 (안 부칙).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부 칙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출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제 사유가 계속되고 있거나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가 있어 거출금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거출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면제 사유가 계속되고 있거나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가 있어 거출금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거출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제 사유가 계속되고 있거나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가 있어 거출금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한 고시·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한 고시·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한 고시·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	제4조(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	제4조(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자조금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 제8조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자조금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설립된 자조금단체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조(자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자조금 중 농산물에 설치된 농산자조금은 이 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자조금으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중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자조금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 제20조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자조금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설립된 자조금단체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조(자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자조금 중 농산물에 설치된 농산자조금은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조금으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중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자조금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이 법 제8조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자조금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설립된 자조금단체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조(자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자조금 중 농산물에 설치된 농산자조금은 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조금으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중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다른 농수산물자조금”을 “「농산물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농산물자조금”으로 한다. ② 밀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농산물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를 “「농산물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산물자조금”으로 한다. ② 밀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농산물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른 농수산물자조금”을 “「농산물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농산물자조금”으로 한다. ② 밀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농산물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이미 승인된 자조금단체('24년 기준 의무 18개, 임의 12개)에 대하여 경과조치 조항을 두고, 제정안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하며, 단체별 전환 일정을 고려하여 1년의 시간을 두려는 등의 제정안 부칙 규정에 동의함.

2) 검토의견

(1) 부칙 제1조: 시행일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 건의 제정안은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12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함.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기존 「농수산물자조금법」의 농산물자조금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게 됨.

이에 따라 하위법령을 새로이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임의자조금 제도가 폐지되는 등의 제도 변화가 발생함.

또한, 기존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른 농산물 품목의 자조금단체들이 후술할 경과조치를 수행할 준비가 필요가 있으므로, 1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2) 부칙 제2조: 거출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부 칙	부 칙	부 칙
제2조(거출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제 사유가 계속되고 있거나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가 있어 거출금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거출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면제 사유가 계속되고 있거나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가 있어 거출금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거출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제 사유가 계속되고 있거나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가 있어 거출금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관련 조문 제27조/제9조/제29조(거출금의 납부) ①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 내에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자조금단체 회원이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납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자조금단체 회원이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납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자조금단체 회원이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납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거출금을 직접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자조금단체는 회원에게 거출금 납부안내서를 직접 발송하거나 공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세 건의 제정안은 김선교의원안 제27조제1항 단서, 이만희의원안 제9조제1항 단서, 박덕흠의원안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거출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적용례를 규정함에 따라 사유의 발생시기에 따라 거출금 납부 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적용례 대상 조항을 김선교의원안 제27조, 이만희의원안 제9조 및 박덕흠의원안 제29조로 설정하는데, 해당 조는 거출금 납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임. 거출금 면제에 관한 사항은 오직 같은 조 제1항 단서로만 한정됨.

따라서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적용례 대상 조항을 각각의 제정안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부칙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부 칙	부 칙	부 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한 고시·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한 고시·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한 고시·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세 건의 제정안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수산자조금법」에 의하여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를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신규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농산물 품목의 자조금제도를 이 법에 따른 농산자조금 제도로 분리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제도의 안정적인 승계 및 운영을 위하여 이와 같은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4) 부칙 제4조: 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부 칙 제4조(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자조금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 제8조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4조(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자조금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 제20조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4조(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자조금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이 법 제8조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관련 조문 제8조/제20조/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자조금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정수 및 임기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 7. 거출금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 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자산의 처리방법 10.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제19조/제7조(설립등기) ① 자조금단체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조금단체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거출금을 직접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자조금단체는 회원에게 거출금 납부안내서를 직접 발송하거나 공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마친 자조금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설립된 자조금단체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마친 자조금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설립된 자조금단체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마친 자조금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설립된 자조금단체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세 건의 제정안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른 자조금단체가 제정안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설립등기를 마치는 경우 종전 자조금단체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 자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정관 위임사항 등에 차이가 있음.

따라서, 기존 농산물 품목의 자조금단체가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가 되기 위하여는 제정안에 따른 정관 변경 및 설립등기가 요구될 것으로 보임.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제정안의 주요 차이점 >

구 분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제정안
자조금단체	- 「민법」상 비영리법인	- 제정안에 따른 특수법인
자조금 운용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수행	- 이사회에서 수행
총회 운영	- 법률에서 규정	- 정관에서 규정

자료: 제정안(2205471, 2205614, 2205702)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3.

다만, 안 부칙 제4조는 종전 「농수산물자조금법」 제6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자조금단체를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현재 자조금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지 「농수산물자조금법」 제6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님.⁷⁶⁾

또한, 경과조치가 지칭하는 「농수산물자조금법」 제6조와 제22조는 자조금단체의 설립 규정이 아니라 의무자조금 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⁷⁷⁾에 해당함.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안 부칙 제4조에서 지칭하는 대상을 ‘「농수산물자조금법」 제6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⁷⁸⁾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76)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조금단체”란 제4조에 따른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77)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① 자조금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1. 설치 목적

2. 재원 확보 방안

3. 삭제

4.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자조금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은 다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8) 즉, 안 부칙 제4조에서 지칭하는 대상은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와 임의자조금단체로 보이는데, 이들 자조금단체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이후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라 의무자조금 또는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는 2단계 구조를 보임

(5) 부칙 제5조: 자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부 칙 제5조(자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자조금 중 농산물에 설치된 농산물자조금은 이 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자조금으로 본다.	부 칙 제5조(자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자조금 중 농산물에 설치된 농산물자조금은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조금으로 본다.	부 칙 제5조(자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자조금 중 농산물에 설치된 농산물자조금은 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조금으로 본다.

세 건의 제정안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라 농산물에 설치한 농수산물자조금을 이 법에 따른 농산물자조금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농산물에 설치하여 운용중인 자조금의 법적 근거가 기존 「농수산물자조금법」에서 제정안으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필요한 경과조치로 보임.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현행법 제3조⁷⁹⁾에 따라 설치된 자조금에는 의무자조금과 임의

79)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농수산물자조금의 설치) ①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또는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

자조금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제정안은 현행법상의 의무자조금 형태만을 자조금으로 규정하고, 또한 이에 맞게 정관을 변경하고 새로이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안 부칙 제5조에서는 단순히 현행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자조금을 모두 제정안에 따른 자조금으로 보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임의자조금 및 새로이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의무자조금을 제외하여 제정안에 따른 자조금으로 지칭할 필요가 있어 보임.

예컨대 지칭 대상을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자조금단체가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한 농수산물자조금’ 등으로 수정할 수 있을 것임.

둘째, 안 부칙 제5조 중 ‘종전 「농수산물자조금법」 제3조에 따라 농산물에 설치된 농산물자조금’과 관련하여, ‘농산물자조금’이라는 용어는 제정안 제2조제1호에 따른 용어로서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른 용어가 아님.

따라서, ‘농산물에 설치된 농산물자조금’이 아닌 ‘농산물에 설치된 농수산물자조금’으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안 부칙 제5조는 단일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제1항을 삭제하고 제1항의 내용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규정하는 조문정비가 필요함.

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자조금단체로 통합하여야 한다.

(6) 부칙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부 칙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세 건의 제정안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이 법이 아닌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있어 행위 시 법 주의를 규정하며,⁸⁰⁾ 제정안에서 경과조치를 규정함에 따라 이를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80)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7) 부칙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부 칙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중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자조금”을 “「농산물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농산물자조금”으로 한다. ② 밀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농산물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중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농산물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산물자조금”으로 한다. ② 밀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농산물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중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자조금”을 “「농산물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농산물자조금”으로 한다. ② 밀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농산물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세 건의 제정안은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상의 농산물 품목 자조금제도를 제정안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에 따라,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상 규정을 인용하는 다른 법률을 제정안의 규정을 인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은 ①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면서도 관련 법률을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비효율성을 피할 수 있고,

② 법률 개정의 시차에 따른 법집행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어, 그 효용성이 인정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므로,⁸¹⁾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른 자조금에는 제정안으로 분리하지 않는 수산물 품목 자조금도 존재하므로, 다른 법률이 농산물 품목 자조금에 관한 사항만을 인용하는지, 수산물 품목 자조금에 관한 사항도 인용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이 개정하는 사항의 경우,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제1호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이고,⁸²⁾ ② 「밀산업육성법」 제10조제4호는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⁸³⁾ 모두 농산물 품목 자조금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한편, 제정안은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상 농산물자조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인데, 안 부칙 제7조에서는 기존 「농수산물자조금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률을 개정할 뿐, 「농수산물자조금법」상 농산물자조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지 않음.

81)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24, p.908.

8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1.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자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83) 「밀산업 육성법」

제10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 조성 지원 등 소비기반 조성

따라서 제정안의 부칙을 통하여 「농수산물조금법」상 농산물조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산물조금에 관한 사항만을 유지시키는 다른 법률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는, 농산물조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별도의 「농수산물조금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

(8) 부칙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김선교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부 칙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세 건의 제정안은 다른 법령에서 종전 「농수산물조금법」상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 종전의 규정 대신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려는 것임.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다른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법령이 개별적으로 정비되지 않더라도 제정안의 효력이 그 법률 또는 조항을 인용하는 모든 법령에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임.

국회 법제실에 따르면, 해석상 혼란과 이해하는데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을 통하여 최대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보충적으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임.⁸⁴⁾ 이 경우에도 다른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84)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24, p.908.

문 의 처
02)6788-5416

참고자료

품목별 농산자조금단체 현황(2024년 기준)

구분	품목	단체명	단체설립연도 (의무전환)	자조금 거출기준·방법
의무 (18)	인삼	(사)한국인삼협회	2014 (‘15. 5. 14.)	· (농가) 2,400원/a · (검사업체) 300~900원/kg · (인삼농협) 120원/a · 경작신고 시 농협 거출
	친환경	(사)한국친환경농업 협회	2015 (‘16. 7. 1.)	· 인증면적 기준 3~5원/m ² · 인증확정시 인증기관 거출 · 미납자 고지서 발부(연1회)
	백합	(사)한국백합생산자 중앙연합회	2009 (‘17. 1. 1.)	· 재배면적(m ²)당 400원, 공판장 출하액의 2%, 수출 본당 30원 · 고지서 발부(5, 8월)
	키위	(사)한국키위연합회	2006 (‘17. 2. 15.)	· (농가) 재배면적(m ²)당 30원 · (회원단체) 취급액의 0.3% 이내 · 단체에 거출안내 공문 송부(연 3회 이상)
	배	(사)한국배연합회	2010 (‘17. 7. 6.)	· 배봉지 1매당 2원 · 봉지비에 포함, 전산 자동 수납
	파프리카	(사)한국파프리카생 산자자조회	2000 (‘17. 7. 14.)	· 재배면적(m ²)당 303.1원 · 고지서 발부(1, 7월)
	사과	(사)한국사과연합회	2010 (‘17. 7. 21.)	· (농가) 재배면적(3.3m ²)당 20원 · (농협) 직전년도 취급액 차등부과(2~20백 만원) · 고지서 발부(1, 4, 7, 10월)
	감귤	(사)제주감귤연합회	2008 (‘17. 9. 29.)	· 출하대금의 0.25% · 대금정산 시 농협 거출, 자진신고 및 납부고 지서를 통한 납부
	콩나물	(사)대한두채협회	1994 (‘17. 11. 30.)	· 콩나물콩 사용 1kg당 10원 · 고지서 발부(매월 말일)
	참외	(사)한국참외생산자 협의회	2006 (‘18. 11. 8.)	· (농가) 박스(10kg)당 20원또는 재배면적 (m ²)당 30원 · (농협) 전년취급액기준 2~15백만원 * 박스 미사용시 판매대금에서 공제(1kg당 2 원) · 박스비에 포함
	절화	(사)한국화훼자조금 협의회	2019 (‘19. 9. 18.)	· 공판장 경매액의 0.75%, 계통출하 판매액의 0.75%, 공판장 미출하시 품목별 차등 적용 · 대금정산 시 aT, 농협 거출, 고지서 발부
	포도	(사)한국포도협회	2010 (‘19. 12. 30.)	· (농가) 10원/m ² 이내(최고한도 20만원) · (농협) 전년도취급액의 0.07% 이내 (최고한도 1천만원) · 고지서 발부(6, 8, 11월)

구분	품목	단체명	단체설립연도 (의무전환)	자조금 거출기준·방법
의무 (18)	마늘	(사)한국마늘연합회	2010 (‘20. 7. 24.)	· (농가) 1㎡당 5원 * 구간별 거출: ~2천㎡(1만원), 2~3천㎡(1.5만원), 3~4천㎡(2만원), 구 간별 5천원씩 상향 · (농협) 전년도 취급액에 따라 차등 부과(1 ~6백만원)
	양파	(사)한국양파연합회	2010 (‘20. 7. 24.)	· (농가) 1㎡당 4원(최고한도 20만원) · (농협) 전년도 취급액에 따라 차등 부과(1 ~6백만원)
	뽕은감	(사)한국뽕은감협회	2018 (‘21. 12. 22.)	· (농가) 10원/㎡ (생산자단체) 취급액의 0.1%
	복숭아	(사)한국복숭아생산 자협의회	2008 (‘21. 12. 28.)	· 출하(판매)액의 0.05%
	차	(사)한국차자조회	2003 (‘22. 7. 11.)	· (대상) 재배면적 1,000㎡ 이상 차 경작자 · (기준) 재배면적(㎡)당 20원
	자생란	(사)한국난재배자협 회	2003 (‘22. 8. 22.)	· (대상) 재배면적 1,000㎡이상 자생란 재배농 가 및 법인 · (기준) 재배분수 500분이하 200천원, 공판장 경매가 0.5~1%, 전시판매액의 1~3%
임의 (12)	가지	(사)한국가지생산자 협의회	2005	· 전년도 출하액의 0.1% 이내 (회원농협별 100~500만원)
	오이	(사)한국오이생산자 협의회	2008	· 전년도 출하액의 0.01% 이내 (회원농협별 100~400만원)
	풋고추	(사)한국풋고추생산 자협의회	2012	· 전년도 출하액의 0.04% 이내 (회원농협별 100~400만원)
	블루베리	(사)한국블루베리연 협회	2017 (‘21. 임의신규)	· 재배면적(㎡)당 30.3원
	밤	(사)한국밤재배자협 회	2002 (‘22. 임의신규)	· 재배면적(㎡)당 5원
	단감	(사)한국단감연합회	2009	· 출하(판매)액의 0.14% 이내
	무배추	(사)한국무배추생산 자연협회	2010	· 판매량의 3% 이내(150~540만원)
	고추	(사)한국고추산업연 협회	2010	· 전년도 판매실적의 1% (최소 50만원~최대 500만원)
	딸기	(사)한국딸기생산자 대표조직	2006	· 출하액의 0.08%
	밀	(사)국산밀산업협회	2010	· 40kg 가마당 150원
	버섯	(사)한국버섯생산자 연합회	2001 (‘24. 임의신규)	· 재배면적(㎡)당 20원
	논콩	(사)한국논콩자조회	2024 (‘24. 임의신규)	· 재배면적(㎡)당 5원

※ 음영: 국비지원 대상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